

# 經濟力集中：基本視角과 政策方向

李 奎 億

經濟力集中은 經濟的 資源과 手段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經濟主體에 집중되어 이들이 資源配分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經濟力集中은 본질상 自由市場機構의 생리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資本主義의 역사로 볼 때 그것이 바로 自由競爭의 소산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歐美와 日本 등에 있어서 資本主義體制의 進化軌跡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은 다수의 獨·寡占의 大企業들이 所有關係로 결합되어 있는 企業集團 즉 소위 財閥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企業集團의 성장은 市場機構의 작동결과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高度經濟成長期의 政府政策에 의하여 촉진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企業集團에 의한 經濟力集中은 과거 우리나라의 政治·經濟·社會가 거처온 進化過程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理念과 秩序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모색하려는 현시점에서 經濟力集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效率과 衡平을 조화하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I. 序言：經濟力集中의 意義

經濟力(economic power)은 한 주체가 다른 주체의 自由意思에 따른 經濟的 選擇에 영

筆者：本院 先任研究委員

\* 筆者는 本稿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정리해준 本院의 李在亨 主任研究員, 原稿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해준 本院의 成素美 博士와 南逸聰 博士 그리고 統計資料의 작성에 협조해준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 및 調查統計局의 職員 諸位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 1) 힘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예컨대 Russell(1938)과 Galbraith(1984) 참조.
- 2) 企業集中은 흔히 單一商品市場(또는 產業)에서

향을 줄 수 있는 힘이다<sup>1)</sup>. 資本主義經濟에서 가장 중요한 經濟組織은 企業으로서 일반적으로 經濟力은 일정한 영역에서의 經濟的 資源 및 手段의 상당부분을 所有·支配하는 소수의 企業에 집중하게 된다. 이것의 단순한 형태는 市場構造面에서 보면 獨占 내지 高位寡占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企業集中(business concentration)을 초월하는 企業集團(business group)이 중요한 현상으로 대두되어 있다<sup>2)</sup>. 企業集團이 資本關係를 통한 기업간의 連結·支配組織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보아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20세기 전

반 美國의 트러스트(trust)·獨逸의 콘체른(Konzern)·日本의 財閥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을 논함에 있어 特定個人 또는 그 직접적 통제하에 있는 少數인들이 실질적으로 所有·支配하는 다수의 大規模 獨·寡占의 系列企業들이 여러 市場에 걸쳐 多邊化되어 있으면서 다른 獨立企業에 비하여 우월한 總體的 市場力을 갖는 複合的 企業集團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企業集團은 獨·寡占과 所有集中의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sup>3)</sup>.

經濟力集中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組織形態가 무엇이든간에 그것의 일차적 효과가 自由競爭에 대한 제약인 한 이는 歐美資本主義發展史의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自由資本主義 자체의 所產이라는 점에 二律背反的인 특성을 갖고 있다. 自由市場競爭과 自由企業制는 西歐의 近代市民社會의 經濟的 基調를 이루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法原則은 人格의 平等·所有權의 絕對性·契約의 自由였다. 그러나 大量生産技術의 開發·採擇에 따라 企業規模가 확대되는 일면 企業能力의 隔差가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適者生存의 競爭原理가 작용하

여 소수의 企業이 稀少資源과 市場機會를 先占함으로써 獨占資本의 형성과 이에 따른 經濟力集中이 進行되었다.

經濟力集中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企業集中으로 인하여 經濟的 效率性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所有의 集中에 따라 分配的 衡平이 저해되고 소수 自然人的 의사가 市場機構의 自動調節作用을 대체하므로 分權主義에 입각한 經濟的 民主主義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經濟力이 집중되어 이것이 政治·行政力과 결부되면 소위 政經癒着을 유발하게 되며 거꾸로 政府가 經濟力集中의 폐해에 대처하려면 강력한 權力을 필요로 하므로 民主主義體制에 내재적인 위험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經濟力集中의 심화를 방지한다면 이에 따라 형성되는 利益關係는 所得階層間의 社會的 葛藤과 政治的 分極化를 초래하여 資本主義體制를 내부로부터 해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결국 近代西歐의 市民法秩序가 지향한 自由經濟體制는 經濟力集中을 초래하였으며 이것은 原子的인 自由競爭의 유지와는 대치되는 결과인 것이다. 經濟力集中은 自由經濟體制의 산물이며 그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인식하여 대처하는가에 따라 經濟體制의 전개방향이 다르게 될 것이다. 더욱이 經濟體制에 대한 평가가 각 개인의 價値觀에 크게 의존하는 한 經濟力集中은 理念的 次元的 문제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經濟力集中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時代나 國家에 따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西歐資本主義는 市民法的 權利의 쟁취와 함께 個人的 合理的 選擇과 個人間의 自由·公正한 競爭을 기저로 政治的 民主主義와 一體

---

의 競爭度를 나타내는 市場(産業) 集中(market concentration; industrial concentration)과 경제전체에서 일정수의 上位企業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一般集中(overall concentration)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3) 우리나라의 企業集團은 흔히 財閥이라고 불리는 組織形態로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하 「獨占規制法」으로 함)의 제2조에서 이에 대한 法的 定義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日本에 있어서 1945년 이전의 財閥과 그후의 企業集團은 다른 組織形態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企業集團과도 다르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IV章 참조.

關係 속에서 성립·발전되어 온 것이며 이 과정에서 파생된 經濟力集中은 國家의 公權力을 적절히 행사하여 政治·經濟·社會體制의 조화 속에서 해결함으로써 資本主義의 基本的인 生動力과 價値觀을 유지시켜 왔다. 歐美諸國과 日本 등의 資本主義體制는 기본적으로 自由市場經濟의 틀 속에서 政府가 矯正的 介入을 통하여 資本主義體制를 유지·발전시키려 하였으며 이를 위한 대표적 수단이 財閥解體와 獨占禁止를 핵으로 하는 經濟秩序政策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歷史的 進化過程을 초월하여 獨立과 더불어 歐美的 資本主義體制와 民主政治制가 이식되었지만 6·25動亂 등의 斷絶期를 거쳐 政府의 行政國家的 行動과 함께 經濟開發을 國家目標로 하여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資本主義와 民主主義의 相互作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經濟行爲가 個別主體의 自由意思보다는 政治的 目的에 순응하여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私經濟部門에 대한 政府干涉이 보편화되어 私有財產權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제하고는 市場經濟體制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였고 企業도 본래적 의미에서의 資本主義의 屬性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여 企業成果가 자신의 危險負擔과 創意力의 결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행되어 온 經濟力集中은 반드시 市場競爭의 自生的 產物만은 아니고 政商的 資本主義 내지 賤民資本主義의 색채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의 문제는 크게

經濟的 機會·利得의 不均等分布·大企業의 市場行態 및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 있는 政府政策 및 企業倫理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소수 財閥의 방대한 규모에 기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資本主義體制의 구조적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力集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對策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國家體制理念을 재정비함에 있어 핵심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II章에서는 우리나라의 經濟力集中의 현황을 製造業部門의 30大企業集團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어 III章에서는 그러한 經濟力集中의 원인과 성과를 經濟成長過程 속에서 분석한다. IV章에서는 經濟力集中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로서 日本의 舊財閥 및 현재의 企業集團을 조감한다. 끝으로 V章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經濟力集中對策의 기본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 II. 經濟力集中의 現況

### 1. 企業集團의 規模

1987년 製造業部門의 出荷額基準 30大企業集團은 製造業部門의 雇傭의 17.6%와 出荷額의 37.2%를 점유하였다<sup>4)</sup>. 여기서 雇傭占有率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出荷額占有率은 1977~82년간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1982~87년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表 1). 그

4) 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30大企業集團은 製造業出荷額基準으로 선정된 것을 지칭한다.

〈表 1〉 經濟力集中의 現況

(단위 : %)

企業集團	雇傭占有率			出荷額占有率		
	1977	1982	1987	1977	1982	1987
5大集團	9.1	8.4	9.9	15.7	22.6	22.0
10大集團	12.5	12.2	11.9	21.2	30.2	28.2
20大集團	17.4	16.0	15.1	29.3	36.6	33.9
30大集團	20.5	18.6	17.6	34.1	40.7	37.3

이유는 1977년 후반 이래 大規模企業集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成長産業인 化學·機械 등의 업종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이들 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企業集團의 규모가 크게 팽창하였다가 그 이후 石油化學製品價格의 하락과 造船受注의 부진 등으로 企業集團의 주력업종이 다소 위축된 반면 독립기업의 출현과 성장이 두드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雇傭占有率이 出荷額占有率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이 일반적으로 資本集約的 生産方式을 채택하는 일면 價格操作面에서 市場力을 보유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表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1977~82년간 上位 5大集團(력키金星, 現代, 三星, 鮮京, 大宇)의 비중이 급격히 증대하였고, 1982~87년간에는 30大集團 전체의 비중이 저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上位 5大集團의 비중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上位集團과 下位集團間에 兩極化現象이 진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2〉에서 30大企業集團의 産業別 出荷額比重을 보면 上位企業集團의 상대적 비중증대와 上下位企業集團間의 規模隔差의 원인과 현상이 좀더 명백히 나타난다. 30大企業集團은 化學物·石油·石炭·고무 및 플라스틱製品製造業과 組立金屬製品·機械 및 裝備製造業에서 50%에 가까운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우리나라의 製造業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일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産業이기도 하다. 30大企業集團 중에서도 上位 5大集團은 이러한 成長産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속에서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經濟力集中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組立金屬製品·

〈表 2〉 中分類産業別 企業集團의 比重(出荷額基準)

(단위 : %, 개)

	31	32	33	34	35	36	37	38	39
5大集團	4.9	6.3	2.8	5.6	27.4	6.3	9.9	40.9	1.4
10大集團	6.0	10.2	6.0	13.3	37.0	19.5	22.0	46.4	1.4
20大集團	22.6	13.5	6.0	17.1	46.2	21.9	31.4	47.8	1.4
30大集團	26.2	20.4	6.2	17.2	49.0	28.9	39.2	49.2	1.5
參與集團數	11	12	4	8	20	10	9	23	2
30大集團總出荷額比重	7.3	8.9	0.2	1.2	26.5	2.9	9.1	43.7	0.0

註 : 産業分類番號別 産業名은 다음과 같다.

31 飲食料品 및 담배製造業, 32 纖維·衣服 및 가죽産業, 33 나무 및 나무製品製造業, 34 종이 및 종이製品·印刷 및 出版産業, 35 化學物·石油·石炭·고무 및 플라스틱製品製造業, 36 非金屬礦物製品製造業, 37 第1次金屬製品製造業, 38 組立金屬製品·機械 및 裝備製造業, 39 其他製造業

〈表 3〉 綜合商社의 輸出比重

(단위 : %)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綜合商社輸出額/總輸出額	20.3	31.9	42.5	50.5	50.1	37.9
重化學製品/總輸出額	—	40.3	45.3	54.8	58.2	53.8
重化學製品/綜合商社輸出額	—	45.9	60.4	73.5	78.1	78.0

資料 : 商工部.

機械 및 裝備製造業에서는 30大企業集團이 49.2%의 占有率을 갖고 있으나 上位 5大企業集團의 占有率이 40.9%로서 이들의 특성과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밖의 産業에서는 上下位集團의 구별없이 유사한 수준의 占有率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측면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20개 및 23개 企業集團이 각각 化學物·石油·石炭 및 프라스틱製品製造業과 組立金屬製品·機械 및 裝備製造業에 참여하고 있으며 30大企業集團의 總出荷額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6.5%와 43.7%에 이르고 있어 經濟力集中에 있어서 이들 産業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主力産業이었던 纖維·衣服 및 가죽産業이 30大企業集團 出荷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불과하다.

30大集團의 輸出占有率은 1977년에 38.5%, 1985년에 41.3%로 出荷額占有率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5년에 製造業總出荷額에서 輸出이 차지하는 비중은 29.8%이지만 上位 5大集團의 輸出率은 33.6%로 輸出寄與度가 製造業平均보다 높다. 그러나 餘

他集團의 輸出率은 製造業平均에 미달하는 23.6%로 30大集團으로서의 平均은 29.5%에 불과하였으므로 企業集團이 輸出을 주도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8개의 綜合貿易商社가 있는데 貿易協會가 中小企業의 輸出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高麗貿易을 제외한 7개는 각각 大規模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이다<sup>5)</sup>. 高麗貿易은 綜合貿易商社의 總輸出額에서 불과 2%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綜合商社의 輸出占有率은 1976년의 15.4%로부터 계속 증가하여 1983년에는 50.5%에 달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여 1987년에는 37.9%로 되었다(表 3). 이것은 최근에 下位企業集團 및 獨立企業의 독자적인 輸出이 증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企業集團의 成長과 企業結合

企業集團의 팽창은 기존 系列企業의 규모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製造業部門의 주도로 高度成長이 지속된 경제에서는 企業의 內部成長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간에 企業集團의 규모확장을 위해 企業新設을 포함하는 광의의 企業結合이 활발히 진행되었다<sup>6)</sup>. 즉 系列企業의

5) 7개의 綜合商社는 三星物産, 雙龍, 大字, 曉星物産, 럭키金星, 鮮京, 現代綜合商社이다.

6) 獨占禁止法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企業結

<表 4> 企業結合 內譯

	81	82	83	84	85	86	87	88	89.8	合計
企業結合件數	148	288	210	231	173	204	216	183	115	1,768
系列	113	200	138	87	92	98	82	45	27	882
非系列	35	88	72	144	81	106	134	138	88	886
大規模集團	70	153	129	81	75	103	94	96	54	855
系列	57	108	86	47	43	60	47	25	5	478
非系列	13	45	43	34	32	43	47	71	49	377

註：大規模集團은 1987년 4월 1일 이전에는 資產基準 30大企業集團이며 이후는 獨占規制法에 의해 각 연도별로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된 集團을 대상으로 함.

內部成長을 통한 企業集團의 확장과 아울러 企業結合을 통한 系列企業數의 증대에 따른 外延的 擴張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1970년 30大企業集團의 平均系列企業數는 4.2개에 불과하였으나 그후 高度經濟成長期에 확장을 계속하여 1979년에는 14.3개로 대폭 증가하였다<sup>7)</sup>. 여기서 주목할 것으로서 이 기간중 企業結合의 내역을 보면 既存企業의 取得이 135건임에 비하여 企業新設이 202건으로 더 많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經營資源을 갖는 企業集團이 새로운 事業分野에 진출하기 위하여는 열악한 既存企業을 引受·合併하기 보다도 새로운 企業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또한 經濟發展에 따라 새로운 商品市場이 계속하여 등장하므로 이에 진입하기 위하여도 企業의 新設이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sup>8)</sup>.

따라서 1970년대를 통한 企業集團의 팽창은 高度經濟成長과 軌를 같이하면서 既存系列企業의 단순한 量的 擴大보다도 오히려 새로운 市場으로의 進入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같은 기간중 製造業體數는 1.3배 증가하였으나 30大企業集團의 系列企業數는 3.4배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企業集團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와 같은 企業間 不均衡成長에서 財閥問題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 이후 1970년대말의 不景氣와 이에 따른 企業合理化 등에 따라 1980~82년간에는 새로운 企業結合보다도 既存企業의 매각이 많아 1982년에는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은 평균 13.4개로 감소하였다. 즉 1970년대는 企業集團의 膨脹期이고 1980년대초는 그 整備期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不實企業 및 公企業을 인수함과 아울러 產業構造改編의 움직임 속에서 企業을 신설함으로써 企業集團의 系列企業數는 1989년에는 평균 17.1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1980년대의 企業結合의 추이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獨占規制法에 의해 經濟企劃院에 신고된 企業結合의 내역을 정리하면 <表 4>와

합(business combination)을 株式取得(acquisition)·任員兼任(interlocking directorate)·合併(merger)·營業讓受(takeover)의 네가지 類型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獨占規制法의 제7조에서는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참여를 추가하고 있다.

7) 全産業을 대상으로 한 總資產基準 30大企業集團을 지칭한다.

8) 이에 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李奎億 외(1985) 참조.

〈表 5〉 企業集團과 產業集中(製造業細分類產業 基準)

	製造業全體의 加重平均H指數	參與產業에서의 集團占有率의 單純平均	參與產業에서의 集團占有率의 加重平均	參與產業에서의 單純平均H指數	參與產業에서의 加重平均H指數
1983	0.248	0.375	0.526	0.258	0.235
1987	0.211	0.370	0.492	0.241	0.210

같다. 1981년 이래 1989년 8월 현재까지 신고·처리된 企業結合은 총 1,768건이었으며 그중 所有權의 변동이 이루어진 실질적인 의미의 企業結合은 전체의 50.1%인 88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1980년대의 전반기에 비해 후반에 와서는 전체적인 企業結合件數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 이동이 이루어진 非系列企業間 結合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전체 企業結合 중 大規模企業集團에 의한 것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855건인데 이들에 의한 企業結合에는 系列企業間的 結合이 78.9%로서 상대적으로 높다.

### 3. 企業集團과 產業集中

1987년에 30大企業集團은 製造業部門 509개 細分類產業(産業出荷額이 0인 산업은 제외)의 28.7%에 해당하는 146개의 産業(출하액 비중으로는 75.6%)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산

업에 있어서 30大企業集團의 비중은 49.2%로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表 5〉에서 細分類產業基準의 허핀달(H)指數를 보면 製造業 전체의 加重平均 H指數는 1983~85년간 0.248에서 0.037포인트 하락하여 0.211로 되었는데 이는 동 기간중 同等規模企業數(numbers equivalent)가 4개에서 5개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sup>9)</sup>. 그러나 30大企業集團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H指數의 하락폭이 製造業全體平均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企業集團이 참여하는 産業의 競争度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4. 企業集團의 多邊化度

30大企業集團의 製造業部門 系列企業의 분포를 보면 〈表 6〉에서와 같이 重化學工業·纖維·飲食料品産業에 많으며 여타산업에도 系列企業의 수는 많지 않지만 製造業全體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上位 5大集團은 「組立金屬製品·機械 및 裝備産業」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며 여타산업에 있어서는 30大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이 上下位階層別로 큰 특징을 보이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系列企業數 이외의 관점에서 多邊化(diversification)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出荷品

9) 허핀달(Herfindahl)指數는  $n$ 개의 企業이 존재하는 한 市場 내의 각 企業의 占有率을  $S_i (i=1, 2, \dots, n)$ 로 할 때

$$H = \sum_{i=1}^n S_i^2$$

로 정의된다. 同等規模企業數는 H指數의 逆數로서 한 市場 내의 각 企業의 현재의 市場占有率의 分布로 보아 가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같은 규모의 企業數를 나타낸다. 集中指數에 관한 詳論은 李奎億 외(1984) 참조.

〈表 6〉 製造業中分類産業別 企業集團  
系列企業의 分布

企業集團	31	32	33	34	35	36	37	38	39
5大集團	2	10	2	4	12	4	5	57	1
10大集團	3	18	3	6	21	6	15	74	1
20大集團	27	22	3	13	42	10	20	90	1
30大集團	32	39	4	14	55	14	23	99	2

註: 〈表 2〉와 같음.

目數 및 細分類産業을 기준으로 한 主産業特化度(*ISR*) 및 배리指數( $H^*$ )를 이용하기로 한다<sup>10)</sup>. 30大企業集團은 집단당 평균 61개의 品目을 출하하고 있어 多邊化度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表 7). 上位集團일수록 出荷品目數가 많으며 특히 上位 5大集團은 평균 130개의 品目을 출하하고 있어 여타집단에 비해 매우 많다.  $H^*$ 의 수치로 보아도 上位 5大集團은 상대적으로 多邊化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ISR*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아 企業集團의 規模階層과 多邊化는 일의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多邊化의 정도는 개별 企業集團의 성

〈表 7〉 30大企業集團의 平均多邊化指數

企業集團	集團當平均 出荷品目數	$H^*$	<i>ISR</i>
1~ 5位集團	130	0.756	0.416
6~10位集團	48	0.613	0.510
11~20位集團	79	0.674	0.469
21~30位集團	49	0.561	0.572
30大集團 平均	61	0.640	0.502

10)  $ISR = \text{主産業出荷額} / \text{企業集團總出荷額}$ .  
 $H^* = 1 - H$ .

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 5. 商品市場에서의 企業集團의 位置

1987년에 30大企業集團이 출하하는 延 1,499개(純計로는 837개)의 商品 중에서 市場占有率이 80% 이상인 獨占的 位置를 갖는 것이 103개, 40~60%로서 당해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갖는 品目이 232개, 20%~40%로서 상당한 市場地位를 갖는 品目이 291개에 이르고 있다(表 8). 上位集團일수록 높은 市場位置를 갖는 品目數의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上位集團의 경우 出荷 品目數가 많기 때문에 市場位置가 높은 品目도 역시 많다.

각각의 企業集團이 商品市場에서 갖는 위치를 市場占有率順位의 기준으로 보면 〈表 9〉와 같다. 이 表는 企業集團의 規模順位別로 各 계층에 속한 企業集團의 出荷品目이 각각의 市場에서 市場占有率基準으로 몇 위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30大企業集團 전체로서는 총 1,499개의 出荷品目 중 제1위의 市場占有率을 가진 것이 總品目數의 31.7%인 475개이며, 전체의 2/3에 가까운 941개 品目이 당해시장에서 3위 이내의 市場占有率을 보유하고 있다. 3위 이내에 들지 못하는 品目도 558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品目이 30大企業集團의 總出荷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 그 대신 市場占有率이 1위인 品目の 出荷額比중은 品目數比중을 훨씬 상회하는 55.5%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企業集團이 여러 市場에 참여를 하고 있으나 出荷額을 기준으로 할 때 市場地位가 비교적 높은 市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表 8〉 企業集團 出荷品目の 市場占有率

(단위: 개)

企業集團	20% 미만	20~40%	40~60%	60~80%	80% 이상	合 計
1~5位集團	345	141	82	38	42	648
6~10位集團	149	45	16	9	22	241
11~20位集團	244	64	38	22	30	367
21~30位集團	166	41	15	12	9	243
合 計	873	291	151	81	103	1,499

〈表 9〉 企業集團 出荷品目の 市場位置

(단위: 개, %)

企業集團	1位		2位		3位		其 他		合 計	
	品目數	出荷比重	品目數	出荷比重	品目數	出荷比重	品目數	出荷比重	品目數	出荷比重
1~ 5位集團	224	59.2	133	26.2	68	6.5	223	8.1	648	100
6~10位集團	71	46.9	44	20.8	36	16.5	90	15.7	241	100
11~20位集團	115	60.8	79	20.1	37	8.2	136	10.8	367	100
21~30位集團	65	37.0	40	33.1	29	11.3	109	18.6	243	100
合 計	475	55.5	296	25.1	170	8.9	558	10.8	1,499	100

## 6. 企業集團間 競争

企業集團의 多邊化에 따라 企業集團이 참여하는 市場의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企業集團은 市場規模와 成長可能性이 큰 産業에 중점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商品市場에서의 企業集團間 競争도 격화되고 있다. 편의상 20大企業集團에 국한하여 보면 〈表 10〉에서와 같이 商品數에서는 企業集團의 전반적인 多邊化의 진전으로 이들이 참여하는 시장은 1974년의 292개에서 1982년에는 587개, 그리고 1987년에는 739개로 늘어나 1개의 집단만이 참여하고 있는 市場數나 다수의 집단이 참여하는 市場數가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3개 이상의 企業集團이 참여하고 있는 시

장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수적 비중면에서 보면 1개의 集團만이 참여하고 있는 市場이 1974년에는 76.7%였으나 1982년에는 62.4%, 1987년에는 59.3%로 감소한 반면 4개 또는 그 이상의 企業集團이 참여하는 市場은 0.6%에서 5.1% 그리고 7.6%로 크게 증가하였다.

1987년의 30大企業集團間의 商品市場에서의 競争을 中分類産業別로 보면 〈表 11〉과 같다. 역시 1개의 집단만이 참여하고 있는 市場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특히 나무 및 나무製品製造業, 종이 및 종이製品·印刷 및 出版産業에 속한 商品市場에는 대개가 1개의 企業集團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飲食物品 및 담배製造業, 第1次金屬製品製造業 및 組立金屬製品·機械

〈表 10〉 20大企業集團間的 市場競爭

同一市場에서 競爭하는 集團數	1974		1982		1987	
	商品數	%	商品數	%	商品數	%
1	224	76.7	366	62.4	438	59.3
2	51	17.5	124	21.1	182	24.6
3	15	5.1	67	11.4	63	8.5
4	2	0.6	30	5.1	56	7.6

〈表 11〉 企業集團間 競爭(中分類產業別 分布)

競爭集團數	31	32	33	34	35	36	37	38	39	合計
1개	46	46	17	16	120	28	41	153	11	478
2개	29	15	3	3	48	6	17	69	2	192
3개	16	12	1		11	4	9	45		98
4개	4	3			14	1	1	13		36
5개이상	4	3		1	3	1	5	16		33
合計	99	79	21	20	196	40	73	296		837

註: <表 2>와 같음.

및 裝備製造業에는 다수의 企業集團이 참여하고 있는 市場이 상대적으로 많다.

## 7. 企業集團과 金融

우리나라의 企業集團은 製造業을 기반으로 하면서 保險·證券·銀行 등 金融産業으로도 진출을 확대하여 왔다. 1981년 4월에 市中銀行(朝興·商業·第一·韓一·서울信託)이 民營化되면서 企業集團이 寡占株主로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 西歐나 日本에서와 같이 銀行을 중심으로 財閥이 형성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평균적으로 각 市中銀行에 3~7개의 企業集團이 株主로 되어 있으며 銀行法上 同一人의 정의가 좁기는 하나 그 株式所有上限이 8%로 되어 있어 系列融資의 가능성이

작다. 한편 地方銀行에는 所有制限이 없어 企業集團의 持分이 市中銀行의 경우보다 많으며 같은 地方銀行에 참여하는 企業集團의 數도 적다.

이와 같이 第1金融圈에 대한 企業集團의 참여는 제도적인 규제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만 企業集團은 또한 상당수의 證券會社·保險會社·短資會社·綜合金融會社를 系列企業으로 보유하고 있어 企業集團의 자금창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30大企業集團이 보유하고 있는 金融關聯系列會社는 모두 47개에 이르고 있다.

企業集團은 金融産業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與信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0大企業集團의 銀行與信占有率은 與信管理制度의 강화에 따라 점차 감소

<表 12> 企業集團의 金融機關 與信占有率

(단위: %)

	銀 行		第2金融圈	
	'88.12.	'89.6.	'87.12.	'88.12.
5大企業集團	11.13	9.68	17.62	17.28
30大企業集團	23.25	20.96	37.88	36.50

資料: 財務部.

하고 있지만 大企業의 直接金融活用 및 系列企業間의 資金融通(支給保證)이 용이한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높다고 할수 있다<sup>11)</sup>. 이들이 第2金融圈의 與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銀行의 경우보다 높으며 保險會社·短資會社 등은 關聯企業集團의 系列會社에 대한 資金支援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表 12).

### 8. 企業集團의 所有集中

우리나라에 있어서 經濟力集中의 또 다른 특징인 所有集中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sup>12)</sup>. 우선 個人的 名의로 各系列企業의 出資額이나 議決權株式總數에서 사실상 지배가 가능한 持分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거대한 企業集團을 형성할 수 없다. 좀더 효과적인 방법은 企業을 통한 出資로서 가장 고전적인 형태는 持株會社(holding company)를 통한 피리미드의 連鎖出資이나 1986년에 개정된 獨占規制法에서 금지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는 민간이 소유하는 純粹持

株會社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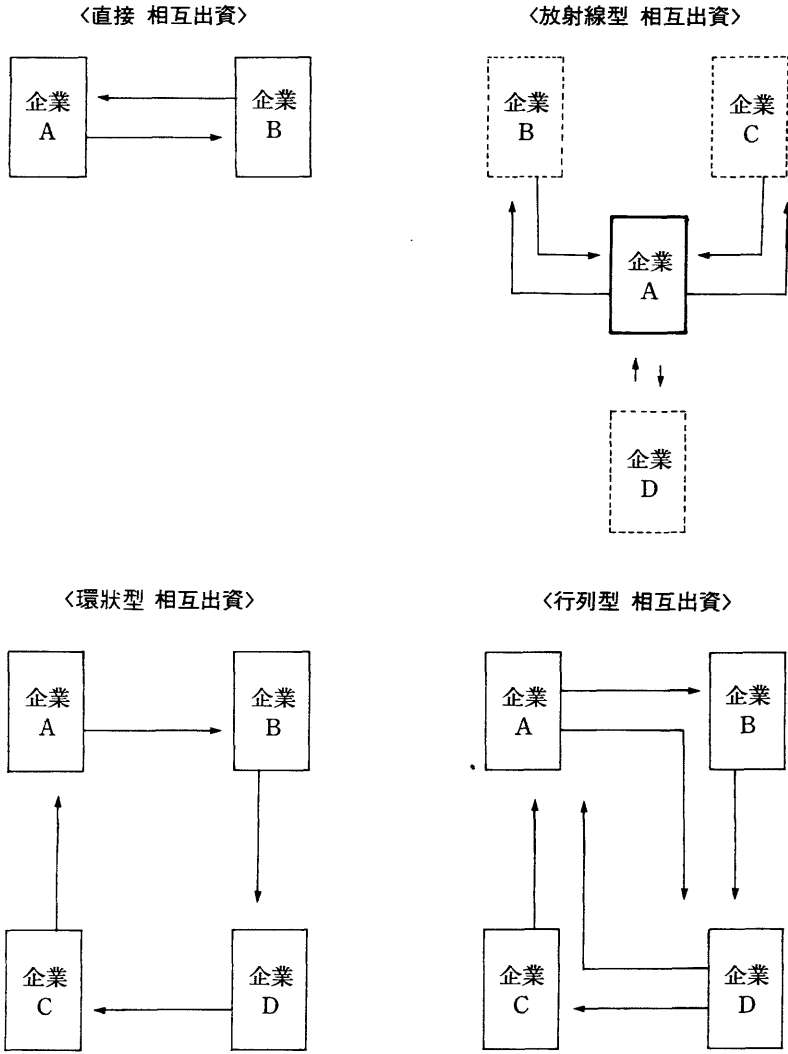
企業集團이 所有集中의 수단으로서 실제로 이용하여 온 것은 企業間株式相互保有(inter-company shareholding)라는 복잡한 형태이다. 相互出資의 유형은 [圖 1]에서와 같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同一企業集團의 系列會社 중 金融會社나 保險會社 이외의 두 會社間의 直接相互出資는 1984년에 개정된 商法이나 獨占規制法에서 금지하기 전에도 별로 볼 수 없었다. 실제로는 1개의 會社가 중심이 되어 여러 會社와 株式를 相互保有하는 放射線型, 다수의 會社가 연쇄적으로 他會社의 株式를 보유하는 環狀型, 다수의 會社가 무작위적으로 각사의 株式를 보유하는 行列型 등이 혼재하여 있다.

실제로 企業集團은 그 資本規模가 거대하기 때문에 系列企業間 相互出資 대신 一方的 出資로서도 相互出資와 동일한 所有集中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獨占規制法에서는 直接相互出資의 금지와 함께 大規模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에 대해 當該會社 純資產額의 40%를 초과하여 國內의 다른 회사의 株式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0大 企業集團의 金融·保險會社를 제외한 系列會社間 相互持株率(=系列會社로부터 받은 出資合計額/系列會社資本金合計)의 평균은 1984년에 46.5%였지만 1~10位集團은 50.9%, 11~20位集團은 41.8%, 21~30位集團은 26.3%로 上位集團일수록 평균적으로 相互持株率이 높았다. 그러나 直接相互出資가 금지되고 會社의 出資總額이 제한됨에 따라 出資限度額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企業公開·有償增資·剩餘金內部留保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自己資本이 확충되고 株式分散이 촉진된 한편

11) 與信管理對象 30大企業集團이다.

12) 所有權(ownership)의 개념에 관한 학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 목시적으로 채택한 개념은 占有(possession)·支配(control)·權利參與(title)의 결합체이다. Jones(1982)는 이에 관하여 흥미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圖 1] 企業間 株式相互保有的의 基本類型



과다하고 불합리한 他會社出資가 억제되어 相互持株率이 31.5%로 크게 저하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은 특정한 個人大株主 및 特殊關係人 그리고 그가 지배하는 다른 系列企業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다. 獨占規制法에 의해 大規模 企業集團으로 지정된 企業集團 중 상위 10大集團의 株主構成을 보면 1989년 4월 현재로

資本金의 46.4%에 해당하는 持分을 特定大株主 및 系列會社가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5大集團의 경우는 49.4%로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특히 上位集團일수록 株式分散度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系列會社 중 企業公開가 된 것은 企業數로는 30% 미만이며 資本金基準으로는 60% 미만으로서 企業公開度가 낮다(表 13). 즉 우리

〈表 13〉 企業集團의 株式分散度와 企業公開度(1989.4 현재)

企業集團	株式保有比率(%)			企業數	資本金
	特定人	系列會社	計	公開企業/系列企業	公開企業/系列企業
5大集團	13.7	35.7	49.4	56/187=29.9%	56.6%
10大集團	14.7	31.7	46.4	139/514=27.0%	56.3%

註：特定人 = 同一人 + 特殊關係人

나라의 上位企業集團은 系列會社 중 公開法人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公開法人의 경우에도 株式公募比率이 낮아 전반적인 企業公開水準은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 9. 企業集團의 內部去來

企業集團은 다수의 系列企業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계열기업간에 資本的 關係뿐만 아니라 製品販賣 및 資金調達의 면에서 상당한 依存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企業集團은 계열기업간의 垂直結合 혹은 金融 등을 통하여 企業集團의 內部效率性(internal efficiency)를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산업전체로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그만큼 축소시키거나 여타 獨立企業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988년 현재의 與信管理對象 30大企業集團의 賣出額은 전산업에 걸쳐 약 8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23.3%인 21조원 정도가 內部去來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內部去來比率은 上位集團일수록 높아져 上位 5大集團의 경우 27.7%, 上位 10大集團의 경우 25.5%나 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上位集團일수록 많은 系列企業을 거느리고 있어 系列企業間 去來關係가 형성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요인 외에도 上位集團은 각각 集團의 차원에서 重點産業을 중심으로 關聯系列企業을 확장해 온 것도 큰 이유가 될 것이다.

30大企業集團은 金融業에 있어서도 保險·短資·相互信用金庫·地方銀行·創業金融會社 등 여러 업종에 진출해 있지만 자료의 제약상 生命保險會社의 同一系列企業에 대한 貸出現況만을 보고자 한다. 국내에는 현재 6개의 生命保險會社가 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興國生命을 제외한 5개회사를 대상으로 할때 1988년 3월 현재 總運用資金의 13.0%에 해당하는 7,955억원을 同一系列企業에 대출하고 있다(大韓教育保險은 30大企業集團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율만으로는 同一系列貸出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生命保險會社의 자금이 모두 貸出金으로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證券 등 여러 有價證券 및 不動產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生命保險會社의 總運用資金對比 同一系列貸出比率을 보면 大韓 17.5%, 第一 8.2%, 三星 11.4%, 教保 12.6%, 東亞 7.2%이다.

### III. 經濟力集中의 原因과 成果

#### 1. 經濟力集中의 原因

##### 가. 低開發經濟와 企業人能力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은 經濟發展過程 속에서 特定個人이 지배하는 소수의 企業集團이 형성·확장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經濟力集中의 原因은 일차적으로 經濟發展과 企業人能力(entrepreneurship)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開發途上經濟에는 企業活動에 필요한 여러가지 財貨나 서비스에 대한 市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불완전하다. 따라서 극단적인 예로 銀行貸出을 얻는 데 政治的 影響力이 도움이 된다면 이를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企業人은 통상적인 經營者機能에 더하여 그러한 결함을 스스로 메울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缺陷補充(gap-filling) 및 投入物完了(input-completing)의 能力은 특히 市場經濟體制가 미숙한 開發途上經濟에서는 稀少性이 매우 높으므로 企業人能力은 稀少資源인 것이다<sup>13)</sup>. 또한 企業人能力은 價格彈性이 거의 없고 市場에서 거래되지 않는 기본적인 投入物이면서 여러 번 사용하여

도 마모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經濟發展에 따라 어느 시점까지는 이들에게 經濟力이 집중되기 마련인 것이다.

물론 한 經濟에서 요구되는 企業人能力을 구성하는 여러 要素의 종류와 그 상대적 비중은 經濟社會全般的 函數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能力의 발휘가 社會的 道德性和 일치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sup>14)</sup>. 企業人能力은 그 자체로는 沒價值的이지만 이것이 발현되는 양태는 經濟社會의 作動樣式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經濟에 非公式的 部門이 큰 위치를 갖고 있다면 企業人能力은 일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經濟力集中의 原因이면서 그 귀결을 함축하는 본원적인 요인이다.

##### 나. 技術的 依存性和 多邊化의 展開

經濟力集中의 또 다른 原因은 企業集團의 多邊化過程에서 찾을 수 있다. 開發途上經濟에는 成長에 필요한 資本財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經濟發展은 주로 先進技術의 단순한 도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技術的 依存性(technological dependence)은 開發途上經濟의 商品市場構造를 원초적으로 獨寡占化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sup>15)</sup>. 즉 消費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先進技術은 원래 大規模市場을 대상으로 발달된 것이므로 이를 협소한 開發途上國의 市場에 이식한다면 그 規模性 때문에 獨占 내지 高位集中型 寡占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經濟發展에 의한 所得의 증대에 따라 消費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展示效果의 작용으로 先進經濟의 消費

13) Leibenstein(1968).

14) Casson(1982)은 企業人能力의 構成要因을 선천적 및 후천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15) Merhav(1969).

樣態를 모방하게 되므로 個別財貨의 市場規模는 비례적으로 작게 되어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經濟開發初期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人的·物的 資源이 獨·寡占의 大企業에 集中되고 輸入制限과 國內企業의 競爭的 進入에 대한 制限 등 각종의 構造的·制度的 進入障壁으로 인하여 元初적으로 확보된 獨占的 孤立地帶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多邊化를 통한 企業集團形成의 한 원인이 된다. 즉 기존의 市場에서 競爭의 압력이 배제된 가운데 企業內에 축적된 人的·物的·財務的 剩餘能力(excess capacity)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市場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sup>16)</sup>. 多邊化는 既存市場에서의 需要의 彈力性和 生産要素의 特化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企業의 剩餘能力이 클수록 가속될 것인데 開發途上經濟에는 이러한 세가지 要因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低所得 需要構造에서는 各財貨가 代替的이기보다는 補完的인 성격이 강하므로 需要의 彈力성이 낮고 협소한 市場構造와 技術條件의 不可分性 및 進入障壁으로 剩餘能力이 존재하며 生産技法과 勞動熟練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特化도는 낮게 된다.

開發途上經濟에서 企業이 일차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는 規模의 經濟를 향유할 수

있는 大衆消費財 및 大量消費되는 中間財이며 이러한 1次的 擴張機會가 소진되면 企業은 점차 消費의 絕對規模가 작은 財貨로 多邊化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企業集團이 형성되며 元初적으로 相互競爭關係가 약한 企業들도 多邊化가 계속되면서 조만간에 같은 市場에서 경쟁하게 된다<sup>17)</sup>. 企業集團들은 그 形成初期에는 각자의 獨占的 事業領域을 기반으로 서로 影響圈을 인정하나 企業集團의 事業領域이 自己完結型으로 확장하면서 상호간의 競爭이 격화되어 經濟全體에서의 競爭의 양상이 다수의 創意的 小企業에 의한 原子的 競爭보다는 소수 企業集團間的 寡占的 競爭으로 전개된다.

#### 다. 政府主導의 高度成長政策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은 政府의 經濟政策으로 가속되어 왔다. 經濟發展을 위하여 선정된 戰略的 産業은 대부분 技術·資金·人力·組織 등의 측면에서 대규모의 企業能力을 필요로 하므로 企業集團이 單獨企業보다 유리하게 되어 그러한 産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租稅·金融·貿易面에서의 保護 내지 支援策의 혜택은 企業集團에 귀속되게 마련이었다. 다시 말하여 元初적인 企業能力의 축적에 따른 自然發生的인 多邊化를 통하여 企業集團이 형성되고 그 성장이 다시 政府主導下의 高度成長政策으로 촉진된 것이다.

한편 不實企業 내지 倒産企業의 처리에 관한 政府의 政策도 企業集團의 規模膨脹에 기여하였다. 經營不實·景氣變動·産業構造變化 등으로 倒産의 위기에 처하거나 銀行管理下에 있는 大企業이 실제로 破産·消滅한다면 債務不履行과 失業 등 經濟的·社會的·政治的 波

16) Leff(1978)는 開發途上國의 企業集團을 Leibenstein의 이론을 응용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企業集團은 E.A.G. Robinson의 適正企業(optimum firm)論부터 시작되는 多生産物企業(multiproduct firm)論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개관과 참고문헌은 李奎億 외(1988)에 소개되어 있다.

17)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후반에 다수의 企業集團이 海外建設·金融·重化學工業分野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한 사실로서 예시될 수 있다.

及效果가 크다는 판단 아래 政府는 흔히 企業集團으로 하여금 이러한 企業을 인수토록 권유하며 그 反對給付로 金融이나 다른 認許可事業에서의 優先權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조치는 인수하는 企業集團의 財務構造에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겠지만 인수된 不實企業의 經營이 장기적으로 호전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企業集團의 실질적인 팽창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 라. 資本調達方法的 特性

經濟力集中의 또 다른 측면인 所有集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金融制度 및 資本市場의 여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企業集團의 급속한 成長을 위하여는 막대한 資本이 필요하다. 一般的으로 企業의 資本調達方法은 利益의 內部留保·株式發行·借入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資本形成의 기반이 약한 단계에서의 高度成長은 자연히 借入을 통한 企業의 外部金融依存度を 높게 된다. 이와 같은 資本調達方法에 의하여 企業集團이 형성·확장되는 과정에서 所有의 分散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個人이나 家族의 資本으로 시작한 企業이 타인의 광범위한 株式參與 없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留保利益 및 外部 金融에 의존하여 企業을 확장·신설한다면 經濟力은 결국 企業集團을 實質적으로 所有·支配하는 소수의 개인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企業集團의 多邊化過程에서 企業結合 및 資本調達方法으로 株式의 企業間相互保有 및 系列企業間 出資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企業의 資金調達能力의 제약을 企業集團內에서 系列企業間의 出資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해소하려고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

지만 그 원인과 효과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우선 該當企業은 실질적인 出資 없이 외형상 自己資本을 증대하고 議決權을 집중시킴으로써 최소의 資本으로 최대의 企業支配力을 행사하게 되며 또한 特殊關係人에 의한 持分限度規定을 회피하여 企業公開를 위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종래에 金融機關은 만성적인 超過金融需要에 직면하여 일종의 配給制인 與信管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個別企業의 自己資本比率을 基準으로 하였으므로 企業集團內의 系列企業들은 좀더 많은 金融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株式의 相互保有를 확산시킬 동기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은 架空의 規模擴大를 통하여 동일한 實體的 規模의 單獨企業보다 좀더 유리한 交渉力을 갖게 되며 이것은 企業集團의 相對的 高成長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 요인이 될 것이다.

## 2. 經濟力集中의 成果

經濟力集中의 成果를 논의함에 있어서 經濟力集中의 肯定的 側面은 기본적으로 개별 企業集團의 利點으로 귀착되는 반면 그 否定的 側面은 企業集團의 폐해뿐만 아니라 所有集中 및 企業集團의 形成過程 등 소위 財閥問題의 전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經濟力集中에 대한 政策方向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企業集團의 성과를 평가할 때 주의하여야 할 또 다른 점은 企業集團의 문제는 獨占 내지 寡占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企業集團에는 獨·寡占의 系列企業이 다수 존재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이들이 독립



된 單獨企業이라고 하더라도 獨·寡占的 市場構造에 기인하는 성과는 같을 것이며 따라서 그 대책도 통상적인 獨占政策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集團만의 성과는 원칙적으로 다수의 企業이 공동의 所有·支配關係로 연결되어 있는 組織이라는 관점에서 따로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독과점문제와 企業集團의 문제를 분리하여 고찰한다는 것은 정책적 시각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 가. 肯定的 側面

企業集團의 실질적 이점은 系列企業間的 資源共有와 여러 市場活動間的 共通要素에 기인하는 多生産物 및 多工場 體制的 企業組織規模의 經濟性(單一工場規模의 經濟性과는 다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共同效果(synergy)를 얻을 수 있으므로 資源을 절약함과 동시에 稀少資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sup>18)</sup>.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所有集中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지만 經濟構造의 轉換과 같은 動態的 狀況 특히 經濟發展의 初期段階에서는 企業人能力이 커다란 制約條件이 되므로 所有와 經營이 一體化된 상황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더욱 왕성하게 발휘되어 企業活動에 수반되는 이익을 可視化하여 經濟發展을 선도하고 일반의 經濟的 成就慾求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市場活動에 대한 企業集團의 참여는 情報의 흐름을 증대시켜 投資와 生産決定을 둘러싼 不確實性을 축소하는 한편 多邊

化로 인하여 危險을 분산시킨다. 이것은 企業集團의 安定的 成長과 이에 수반되는 投資能力의 培養 나아가 經濟全體의 資本收益率을 높임으로써 經濟成長을 가속시키게 된다. 企業集團은 資源의 集積效果와 擴散效果도 갖는다. 예컨대 企業集團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人力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들간의 상호작용과 여러 활동에 걸친 經驗蓄積에 의해 개개인의 潛在能力이 크게 발현될 수 있다. 또한 優秀人力이 집적되면 單線型的 企業組織의 확대에 따른 規模의 不經濟 내지 組織非效率性을 제거하기 위하여 事業部型 企業組織이나 새로운 企業을 구성하기에 유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企業集團에서 습득된 人力이 외부로 확산되어 독립할 경우 대부분 中小規模인 새로운 企業이 자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된다.

企業集團은 革新과 經濟機會에 대한 敏感性을 실제의 投資와 生産決定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資本·技術 및 經營資源을 좀더 용이하게 조달하고 최소한 企業人能力을 經濟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企業集團은 새로운 市場機會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集團內에 축적된 각종의 剩餘能力을 신속적으로 전용함으로써 추가적인 資源利用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資本形成을 증대시켜 經濟의 效率的 成長에 기여한다.

#### 나. 否定的 側面

企業集團의 이점은 다른 企業들과의 對立的 關係에서는 否定的 效果로서 작용할 수 있다. 예로서 企業集團에 의한 垂直結合 등 市場의 內部化는 企業集團으로서는 內部效率性을 증진할 수 있겠지만 企業集團을 需要者로 하는

18) 共同效果는 경제학적 개념인 範圍의 經濟(economies of scope)와 포리의 관계에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李奎億 외(1988) 참조.

企業들에 대하여는 市場이 縮小 내지 封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 市場內에서 最小效率規模를 달성할 수 있는 企業의 數는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어떠한 前提하에서든 社會厚生函數를 설정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그것의 厚生效果를 계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市場에서 배제되는 企業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分배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더욱이 私的 效率性的 증진이 企業의 利潤增大에만 기여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企業集團은 製品市場뿐만 아니라 要素市場에서 대부분의 獨立企業에 비하여 우월한 交渉力 내지 市場位置를 보유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실질적 요인에 입각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컨대 自己資本基準의 與信管理體制에서 相互出資 및 系列企業間 出資로 연결된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은 實質的 規模가 같은 여타 獨立企業보다 受信面에서 유리하다. 비록 相互出資가 없다고 하더라도 企業集團이 총체적으로 金融機關과 유지하는 오랜 去來關係 때문에 그 系列企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信用도를 얻게 된다. 또한 企業集團의 系列企業들이 집단으로서 新規人力을 채용하여 내부적으로 分배한다면 각각의 系列企業은 獨立企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우수인력을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勞動市場 및 中小企業의 脆弱性 때문에 賃金이라는 價格의 自動調節作用을 통하여 해소되지 않는다. 企業集團의 廣告 및 其他 販賣促進活

動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規模의 經濟性 이외에 消費者에게 주는 이미지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이 獨立企業에 비하여 消費者 購買를 유인하기가 쉽다.

企業集團의 經營特性은 일반적으로 擴張追求나 危險分散의 동기에 따른 多邊化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市場을 개척하기도 하나 때때로 실제적인 效率性的 이점이 없이 中小企業型 市場에 참여하여 競爭을 저하시키거나 다른 競爭的 中小企業을 우세한 資本力을 통하여 도태시킬 수도 있다. 물론 企業集團이 效率性面에서 약간의 우위라도 갖는다고 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市場封鎖(market foreclosure)·價格壓搾(price squeeze)·交互去來(reciprocal dealing)·壟濠效果(entrenchment effect)·橫的補助(cross subsidization)·相互自制(mutual forbearance)·潛在的競爭(potential competition)의 排除 등 企業集團의 특유한 市場행동으로 競爭을 저해하고 公正한 去來秩序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sup>19)</sup>.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또 다른 문제는 급속한 多邊化過程에서 企業集團의 系列企業間에 資本的 結合關係가 발생한 위에 外部金融에 의한 무리한 企業擴張으로 財務構造가 脆弱하게 되어 소수 系列企業의 倒産이 企業集團 전체의 連鎖的 倒産을 유발함으로써 이로 인한 經濟的·社會的 副作用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위 救濟金融을 제공하게 되는 등 退去障壁(exit barrier)을 구성할 수 있다<sup>20)</sup>.

최근에 특히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로서 企業集團에서의 賃金交渉의 경우에 獨立企業과 달리 系列企業 중에서 가장 높은 賃金水準을

19) 이와 같이 企業集團에 특유한 제반 競爭制限 및 不公正去來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李奎億 외(1988) 참조.

20) 李奎億 외(1988).

標準으로 하거나 企業集團全體를 대상으로 賃金水準을 결정하려는 雨傘效果(umbrella effect)의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企業의 獨立的 採算성과 관계없이 賃금이 결정되는 체제하에서는 系列企業의 개별적인 合理化는 물론 企業集團 전체로서의 內部構造調整을 어렵게 할 것이다.

企業集團이 갖고 있는 좀더 구조적인 문제는 所有集中에 의한 것이다. 企業集團의 규모가 비대해지는 반면 企業公開의 부진과 企業間 株式相互保有로 所有의 分散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企業集團에 있어서 富의 偏在와 世襲이 초래된다. 아울러 集團全體의 經營方針 및 系列企業의 市場戰略이 기본적으로 1인의 統制下에 있으면 企業集團에 關及적 성격을 부여하게 되어 企業集團의 規模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組織管理上 規模의 不經濟가 나타나 오히려 共同效果에 따른 이점을 능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企業集團이 갖는 否定的 效果는 근본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바 있듯이 經濟主體間의 經濟的 機會의 不均等과 아울러 所有集中과 企業集團의 成長過程에 대한 평가에 기인한다. 즉 대부분의 企業集團은 政府의 庇護 내지 誘引 아래 國民經濟의 발전에 좀더 크게 기여하지 않고 勤勞者·一般消費者 및 中小企業에 不利益을 초래하면서 外債·銀行融資 등 他人資本을 이용하여 손쉽게 獨占利潤을 획득하는 일면 이를 不動產 등 非生産的 部門에 투자함과 아울러 政府의 政策을 私益에 부합하도록 유도하여 왔다는 인식이 國民一般에 팽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러한 否定的 認識은 그것의 타당성여부에 관계없이 社會的 緊張感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經濟體制나 政治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야기하고 經濟倫理를 왜곡시키는 결과도 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企業集團이 갖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영역을 벗어난 政治·社會的 次元의 문제로 되어 있으며 그만큼 個人的 價値判斷과 客觀的 事實이 혼재하여 있고 이것이 經濟力 集中對策의 方向設定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日本의 財閥과 企業集團

### 1. 戰前 日本의 財閥

1945년까지 日本에서 支配的 資本으로 군림하였던 財閥의 역사는 상당히 길어 三井·住友 등은 300년까지 소급된다. 이들은 明治維新 이후 새롭게 등장한 三菱·安田·古河 등과 함께 당초 「政商」으로서 明治政府와 결탁하여 官業拂下 등을 통하여 확대되었는데 財閥로서의 형태를 갖춘 것은 第1次大戰頃이었다. 이 단계에서 三井·三菱은 生産部門과 流通部門으로부터 多邊化를 전개하고 산하의 直系事業을 株式會社로 개조·독립시켜 이들을 통할하는 持株會社를 설립하였다<sup>21)</sup>.

財閥은 政商的 存在로 커지게 됨에 따라 정치에 간섭하게 된다. 특히 소위 「滿州事變」 이후 정치의 실권이 政黨에서 軍部로 이전되면서 巨大財閥과 軍部는 일체화되고 日本經濟의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들의 특

21) 日本의 財閥과 企業集團에 관한 문헌은 방대하나 최근의 저술로서 奥村(1987)을 들 수 있다.

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巨大財閥은 소수의 同族의 獨占의 支配下에서 근대적인 資本主義의 經營에는 적합하지 않는 봉건적인 기풍과 방침하에서 운영되었다.

② 財閥은 財閥本社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그 事業支配의 형태는 持株支配에 의한 통제였다. 이것은 우선 財閥同族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財閥本社를 만들고 本社는 直系會社, 直系會社는 子會社, 子會社는 傍系會社(孫會社)를 支配하는 형태를 취하였다(圖 2).

③ 財閥은 대부분의 사업분야에 진출하였는데 財閥企業이 지배적인 사업분야에서는 다른 企業은 그 지배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限界企業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한 自由競爭의 길이 봉쇄되었다.

④ 巨大財閥은 産業部門만이 아니라 金融部門도 지배하였다. 이들은 모두 銀行·信託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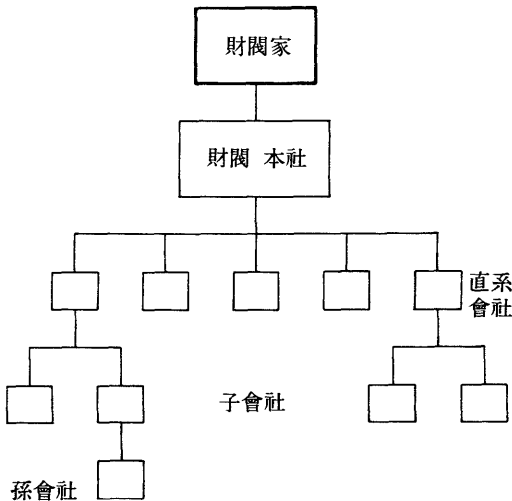
社·保險會社 등의 金融機關을 소유하고 이를 통하여 資金을 흡수하고 産業에 대한 投融資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企業支配의 주요한 수단으로 하였다.

## 2. 終戰直後 日本의 財閥解體

終戰後 財閥解體時에 美國의 「財閥調査委員會」는 戰前財閥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財閥의 弊害를 넓은 시야에서 볼 때 産業支配權의 集中은 勞資間의 半封建的 關係를 존속시켜 勞賃을 인하하고 勞動組合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또한 獨立的 企業家의 創業을 방해하고 中産層의 發흥을 저지하였으며 中産層이 없기 때문에 個人이 독립할 수 있는 經濟的 基盤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軍部에 대항하는 세력도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軍事的 意圖에 반대하는 民主主義的·人道主義的인 國民感情의 발전도 볼 수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特權的 財閥支配下에서 低賃金과 利潤集積은 國內市場을 협소하게 하여 商品輸出의 重要性을 높임으로써 결국 日本을 帝國主義的 戰爭으로 치닫게 하였다”<sup>22)</sup>. 日本을 점령한 美國政府는 “財閥이 존속하고 있는 한 日本은 財閥의 日本”일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財閥解體를 단행하였다.

1945년 9월 美國政府는 日本經濟의 管理方針을 經濟의 非軍事化·經濟의 民主化·平和經濟의 유지로 대별하고 이어 11월에 經濟民主化를 農地改革, 勞動組合育成法의 제정, 産業民主化政策의 세가지로 구체화하였는데 이 중에서 産業民主化政策은 財閥解體, 經濟力集中排除, 私的統制團體의 除去에 의하여 종래의 競爭制限的 制度를 배제하기 위한 一時的

(圖 2) 戰前의 財閥 : 피라미드型



22) 日本公正取引委員會(1977).

措置와 「獨占禁止法」(1947)의 제정에 의한 장래의 競爭政策을 정립하기 위한 恒久的 措置로 구분하였다.

財閥解體에 대하여만 본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① 持株會社の 解體 ② 財閥家族의 企業支配力排除 ③ 株式所有의 分散化 ④ 經濟力集中排除의 네 가지로 대별된다.

財閥解體를 위하여는 우선 財閥資産을 동결하고 3차에 걸쳐 財閥本社 내지 事業持株會社로 인정된 事業會社 83사와 財閥家族 56인의 株式을 持株會社整理委員會가 公開處分하였다. 처분에 있어서는 特殊處分(從業員, 緣故者)과 一般處分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우선하여 매각하였다. 또한 財閥再編을 막기 위하여 前所有者인 財閥一族 및 發行畢株式의 1% 이상의 所有者에게는 매각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 株式所有를 유대로 하는 財閥企業의 結合은 절단되었다. 또한 財閥의 중추부를 이루고 있던 持株會社 42사 중 附帶事業을 갖지 않은 純粹持株會社 16사는 單獨解散되고 事業部門을 갖고 있던 26개의 持株會社는 第二會社를 설립하여 해산함으로써 三井本社·三菱本社·住友本社·安田保善社를 위시한 財閥統合의 중심부가 해체되었다. 財閥家族의 企業支配力排除에 있어서는 10大 財閥의 家族 56명이 財閥家族으로서 지정되어 그들이 소유하는 有價證券은 持株會社整理委員會가 양수하고 아울러 財閥關係會社の 任員으로부터 추방되어 當該企業에 재취직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한 財閥指定時 10大財閥家族과 同一戶籍에 있던 자(財閥同籍者)와 主要 財閥

會社の 任員으로 그 任免이 當該財閥의 支配下에 있으며 또한 當該財閥의 利益을 대표하여 當該會社の 중요한 업무에 참가하고 있던 자(財閥關係任員) 3,668명이 1,600여개의 財閥關係企業으로부터 추방되고 再就職이 금지되었다.

株式所有의 分散化를 위하여 持株會社整理委員會가 양수한 株式은 財閥家族과 持株會社가 소유하는 株式을 위시하여 獨占禁止法에 의한 要處分株式 등 1946년말 日本의 株式會社の 拂入資本金總額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低所得과 食糧難 등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방출된 株式을 소화할 기반이 약하여 從業員名義로 된 것도 실제로는 會社の 自社株保有나 原所有者로 환류된 것도 상당히 있어 “株式所有의 分散이라기보다도 株式所有의 混亂”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sup>23)</sup>.

또한 會社間 結合關係를 단절하기 위하여 制限會社(指定會社), 그 子會社(從屬會社) 및 孫會社(關係會社), 이들의 承繼會社(指定會社 등의 第2會社, 營業의 주요부분을 讓受·賃借하고 있는 會社) 등 2,843사에 대하여 當該會社 및 그 任職員の 他會社の 株式 또는 社債의 취득과 當該會社 任職員の 他會社任員兼任을 금지하였으며 특히 三井·三菱·住友의 각 持株會社와 商號·商標를 각각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制限會社·從屬會社·關繼會社(三井系 346사, 三菱系 205사, 住友系 160사)에 대하여 그 商號·商標의 사용을 금지하였다<sup>24)</sup>.

財閥解體는 財閥本社를 해체하고 財閥企業集團의 資本的·人的 結合을 절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財閥解體後 개개의 單獨企業이 市場

23) 御園生(1987).

24) 이 조치는 1957년 7월에 해당기업들의 國際的 信認度を 높인다는 명목하에 취소되었다.

支配력을 갖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巨大企業의 분할을 시도하여 당초 持株會社整理委員會는 分割對象으로 325사(1차 鑛工業 257사, 2차 流通·서비스部門 68사)를 2차에 걸쳐 지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美·蘇간의 대립이 첨예화된 國際情勢變化를 배경으로 美國의 對日占領方針이 日本經濟民主化政策의 철저한 수행으로부터 日本을 금후 東아시아에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全體主義戰爭의 위협에 대한 방벽으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集中排除의 원칙은 한 會社가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서 競爭을 제한하거나 또는 다른 會社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集中排除指定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단지 관련성이 없는 事業部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會社에 과도하게 經濟力이 집중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되었다. 이 原則은 複合結合에 대한 放任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指定取消가 계속되어 실질적으로 分割再編成의 대상으로 된 것은 11사, 일부의 工場處分 및 子會社의 株式處分만을 수행한 것이 7사 등 최종대상은 18사에 불과하였다.

### 3. 財閥解體의 成果

財閥解體·集中排除 등의 過渡的 獨占禁止政策은 중도에 占領政策의 전환에 의해 다소 미진한 상태로 끝났지만 戰後 日本經濟의 復興과 成長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선 持株會社를 중심으로 하는 巨大財閥의 解體는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戰前의 財閥에서 볼 수 있던 극단적인 閉鎖性 특히 本社에 의한 系列企業株式의 過半數所有와 財閥家族의 支配는 經濟發展과 함께 점차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 戰前에 所得分布가 貧富의 兩極에 편재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일반대중은 株式投資의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하였으며 財閥系企業에서 볼 수 있는 所有와 支配의 閉鎖性은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하에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昭和時代에 들어서 財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강화되어 「財閥轉向」이라고 불리는 財閥系企業의 株式의 一部公開와 經營者支配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또한 戰時經濟下에서는 財閥도 軍需生産部門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興業銀行 등의 特殊銀行이나 財閥系以外的 銀行으로부터의 借入도 많게 되어 資金調達面에서의 自己金融性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財閥의 閉鎖性은 점차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戰後의 財閥解體는 말하자면 이 과정을 촉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財閥解體의 특기할 효과는 財閥家族과 같은 世襲的인 所有·經營者와 낡은 經營者의 추방에 의해 經營者層이 일시에 젊게 되었다는 점이다. 株式所有와 유리된 專門經營者層의 진출은 戰後의 企業經營에 競爭的 體質과 積極性을 도입하였다. 이들은 종래의 財閥本社에 의한 支配統制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意思決定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후의 高度成長을 주도한 民間設備投資의 增加는 財閥解體에 의한 經營者層의 年齡低下와 競爭的 環境의 정비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財閥의 解體는 本社에 集中된 株式所有와 中央執權的인 支配體制를 타파하고 財

閥家族支配로부터 經營者支配로의 탈피를 일  
거에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財閥解體의 의의는 財閥本社를 해산하고 財  
閥家族의 企業支配力を 배제함으로써 위로부  
터의 피라미드型的 支配를 단절한 것에 있지  
만 財閥家族의 지배에서 해방된 財閥傘下의  
企業은 피라미드의 頂點은 없어졌으나 橫的으  
로 결합하게 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큰 요  
인으로서 銀行에는 어떠한 解體措置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시해야 한다. 銀行은 持株會  
社로도 지정되지 않았고 集中排除의 대상으로  
도 되지 않았다. 聯合軍은 西獨에서와 달리  
日本에서는 銀行에 대하여 集中排除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銀行主導下에서 財閥이 企業  
集團으로서 再編成될 필연성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財閥企業은 그후 株式相互保有나 融  
資를 통한 企業系列로서 재편성되어 金일의  
企業集團이라는 형태로서 부활하였다. 즉 財  
閥解體의 효과는 戰前의 財閥에서 볼 수 있던  
넓은 형태와 기능을 좀더 近代化하고 合理化  
하여 戰前의 閉鎖型 財閥에서 戰後의 開放型  
企業集團으로 재편성하는 계기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の 公正取引委員會는 獨占禁止政策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戰後初  
期 도입된 일련의 獨占禁止政策은 企業의 행  
동만이 아니라 産業構造·市場構造 자체를 競  
爭的인 것으로 변혁하여 그 결과 日本의 經濟  
體質을 본질적으로 競爭的인 것으로 만들었  
다. 따라서 그 효과는 1950년대 후반부터 광  
범하게 나타나게 되고 다른 經濟政策의 운영  
과 어울려 日本經濟의 발전의 기본이 되었다.

또한 이 競爭的 體質은 그후의 競爭制限的인  
産業政策運營에 의해서도 그다지 변질되지 않  
았다. 競爭體制의 도입이 구체적으로는 「소  
니」나 本田技研 등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企  
業의 탄생과 성장, 鐵鋼·石油化學·電子·自  
動車 등의 부문에서 볼 수 있는 활발한 設備  
投資·技術革新 내지 技術導入으로 결실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戰前부터의 零細企業  
과 大企業間의 소위 二重構造의 완화, 農地改  
革이나 勞動立法 등의 성과와도 관련되는데  
국민의 所得水準의 平準化와 이에 수반하는  
풍요한 國內市場의 형성, 企業經營者의 自主  
성과 責任感의 증가 등의 면에서 그후의 日本  
經濟에 대하여 광범하고 동적인 영향을 미쳤  
다”<sup>25)</sup>.

#### 4. 戰後 日本의 企業集團

企業集團은 戰前의 財閥이 戰後의 財閥解體  
에 의해 변용·재편된 형태로서 발생한 三  
菱·三井·住友의 舊三大財閥系와 戰前의 二·  
三流財閥이나 新興큰체론의 산하에 있던 企業  
혹은 財閥色이 희박하였던 企業이 戰後에 大  
銀行을 중심으로 집합하여 형성한 芙蓉·第一  
勸銀·三和의 三大新興企業集團 등 소위 金融  
系 6大企業集團이 전형이며 新日鐵·토요타·  
日產·日立 등 産業系와 東急·西武 등 流通  
서비스系의 獨立系 企業集團이 이들보다 늦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企業集團은 共同效果를  
거두려는 단순한 機能集團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戰前의 財閥의 歷史的 延長線上  
에서 이해되어야 할 측면도 갖고 있다.

財閥解體에 의해 일단 자립한 大企業群은  
그 사업활동이 畦도에 올라감에 따라 두가지

25) 日本公正取引委員會(1977).

국면에서의 企業結合을 도모하였다. 첫째는 系列化로 大企業이 中小企業과 縱的 支配關係를 맺는 것이며, 둘째는 大企業間의 橫的 結合으로 財閥本社나 財閥家族으로부터 방출된 株式이 초기의 혼란상태를 거친 뒤 곧 大企業間에 相互保有되게 되었다. 이 橫的 結合은 財閥傘下에 있었던 大企業의 經營者에 의한 社長會의 결성으로 진전하였다<sup>26)</sup>. 한편 戰後의 大企業의 재건 중에서 가장 큰 애로는 資金不足으로 이 때문에 銀行의 역할이 매우 크게 되었다. 戰後의 企業集團의 재건은 銀行主導의 형태를 갖고 大銀行에 의한 系列融資가 진행되었다. 戰前에는 財閥本社하에 銀行이 있고 財閥本社의 지시하에 자금을 공급하였으나 戰後에는 銀行과 企業이 직접 연결되어 그만큼 銀行의 역할이 크게 되었다.

1950년대초에 戰前型의 鑛業·輕工業中心의 産業構造가 새로운 技術의 도입으로 크게 변화하려는 초기단계에서 企業集團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 體制가 1950년대에는 아직 과도적인 것으로 새로운 産業構造下에서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1960년 전후에 日本의 産業構造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것은 技術革新으로 合成纖維·石油化學·家電製品·乘用車 등의 新産業이 발흥하여 여러 분야에서 新技術이 外國으로부터 도입되고 이것에 의해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民間設備投資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産業構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舊型의 産業構造에 기반을 두었던 企業集團의 내부구성이 재편되었다. 우선 종전의 體制 속에서

中心的 産業이었던 石炭·非鐵金屬 등의 鑛業이나 輕工業分野의 企業의 지위가 저하하고 그 대신 石油化學·電氣機械 등의 新興産業의 企業의 지위가 높아졌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企業集團보다도 獨立巨大企業의 힘이 강화되었다.

1965년 不況 이후의 日本經濟는 다시 高度成長을 하지만 産業構造가 重化學工業中心이라는 점에서 第1次 高度成長의 연속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産業構造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고 기존의 구조하에서의 大型化·시스템化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企業集團은 第1次 高度成長期에 流動化된 內部編成을 정비하고 獨立巨大企業群에 대하여도 다시 주도권을 잡아 갔다. 또한 그때까지 企業集團化를 지향하면서 단순한 銀行融資系列로서의 색채밖에 없었던 芙蓉·第一勸銀·三和의 세 集團이 企業集團으로서의 모습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즉 企業集團은 1960년 전후의 流動化와 弛緩을 거친 후 좀더 높은 차원에서 한층 큰 존재로 되었다. 당시에는 大型合併이 속출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企業集團體制의 강화와 그것에 촉발되어 일어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企業引受 등 企業集團의 外延의 擴張으로 이것은 企業集團會員社의 大企業에 의한 縱的 系列化로서도 진전되었다.

資本自由化는 이러한 産業再編成을 더욱 촉진하였다. 1967년 이래 수차에 걸쳐 취해진 資本自由化措置는 日本의 大企業經營者에 있어서는 外國資本이 단지 日本에 자유로이 진출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日本의 企業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政府는 資本自由化를 「世界의 大勢」로서 진전시키는 한편 資本自由化에 대항하는 政策을 전개하는

26) 社長會의 내역은 아래의 本章 5節에 소개되어 있다.



모순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모순된 政策은 大企業으로 하여금 産業再編成을 더욱 進전시키도록 하여 企業集團化를 촉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外國資本에 의한 引受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大企業의 株式相互保有를 확대시켜 이에 따라 企業集團內的 株式相互保有率이 급속도로 상승하였다. 1960년 대말에 진행된 企業集團體制의 정비에 의해 그후 資本輸出이나 國內의 대형프로젝트 등 個別企業만으로는 할 수 없는 과제가 발생함에 따라 企業集團으로서 이에 대응하게 되었다. 따라서 産業의 시스템化는 단순한 企業의 機能的 시스템化가 아니라 資本別로 企業集團單位에서 시스템化하고 大型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형태로 되어 企業集團體制를 일층 進전시키게 되었다.

企業集團이 産業構造의 변화과정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없다면 효율적인 企業結合의 체제로서 잔존할 수 없다. 企業集團의 형성을 고찰하는 경우에 그 형태와 기능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産業構造的 視角이 중요하다. 戰前의 財閥이 商業資本의 機能을 가졌던 것은 纖維工業을 중심으로 輕工業에 편중된 産業構造속에서 유효한 獨占의 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流通過程에서의 商業資本의 機能과 操作이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戰後 企業集團이 형성된 經濟的 原因은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하는 産業構造高度化의 과정에 있어서 銀行·商社·重化學工業·加工型産業 등을 잇는 自己完結의이며 多邊的인 조직을 보유함으로써 효과적으로 巨額의 資本을 조달하고 市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역사적으로 본 企業集團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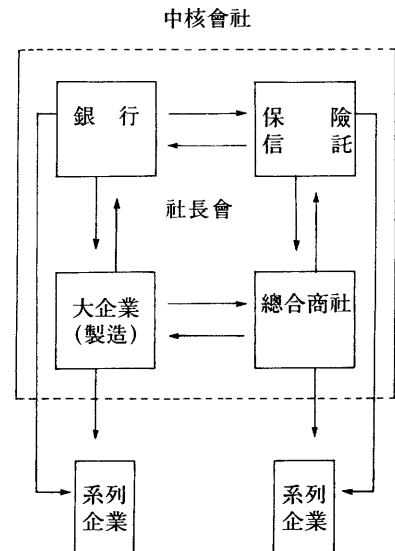
① 企業集團內的 大企業이 각각 有機的·多角的으로 株式을 相互保有하여 集團全體로서 보면 圓環狀의 株式相互保有를 하고 있다(圖 3).

② 企業集團의 中核會員社社長들에 의한 社長會가 결성되어 있다. 社長會는 株式의 相互保有에 입각한 것으로 각 社長은 自社가 소유하는 集團內 他會員社의 株式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社長會는 사실상 大株主會의 역할을 수행한다. 社長會는 情報·連絡機能外에 相互支配機構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③ 企業集團單位로 여러 분야에 걸쳐 會員社에 의한 共同投資會社가 설립되므로 이것에 의해 運命共同體로서의 利害關係가 생긴다.

④ 大都市銀行이 企業集團의 大株主로서 相互保有體系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또한 集團內的 金融機關으로서는 信託銀行·生命保險會社·損害保險會社 등이 있는데 大都市銀行은

[圖 3] 戰後的 企業集團：圓環狀



〈表 14〉 社長會의 結成時期 및 會員社數(1988. 9. 30)

	三井	三菱	住友	芙蓉	三和	第一勸銀
名稱	二木會	三菱金曜會	白水會	芙蓉會	三水會	三金會
結成時	1961.10	1955년경	51~52년경	1966. 1	1967. 2	1978. 1
會員社	24 (20)	29 (25)	20 (16)	20 (25)	44 (41)	47 (41)

註: ( ) 안의 企業數는 金融業을 제외한 경우의 企業數.

集團內 他社에 대한 자신과 이들 金融機關의 系列融資의 幹事役을 하고 있다.

⑤ 企業集團은 또 하나의 중심으로서 總合商社를 갖고 있다. 集團內에서 돈의 去來를 맡고 있는 것이 都市銀行이라면 물건의 去來를 맡고 있는 것이 總合商社이다.

⑥ 企業集團은 銀行·總合商社를 중핵으로 하면서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많은 産業分野에 그 會員社를 배치하고 있어 단순한 複合企業體가 아니라 포괄적인 産業體系를 갖고 있다.

財閥과 企業集團과의 차이점으로서 첫 번째 양자의 組織最上部에 있어서의 支配形態가 다르다. 財閥은 持株會社에 의한 垂直的인 一方的 所有構造를 갖지만 企業集團에 있어서는 企業集團會員社에 의한 相互保有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所有形態의 변화에 수반하여 支配形態도 財閥의 위로부터의 一方的인 支配에 대하여 企業集團은 社長會會員社에 의한 相互支配體系로 변화하였다. 둘째로 企業集團에 있어서는 財閥에서와 같은 家族所有에 의한 家族支配는 소멸하고 그 대신에 經營者가 法人所有를 배경으로 하여 社長會를 결성하고

있다. 셋째로 財閥과 企業集團의 内部編成에 차이가 있어 특히 企業集團에 있어서는 銀行의 힘이 강하게 되었다. 이것은 戰後 企業의 過剩貸出에 대응한 것이나 戰前의 財閥本사가 갖고 있던 金融力을 企業集團內의 銀行이 대신하는 것으로 되었다. 결론적으로 財閥과 企業集團間의 기본적인 차이는 所有構造에 있으며 이것이 經濟力集中이 갖는 의미가 戰前과 戰後의 日本에 있어 다르게 되는 근본원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經濟力集中對策을 강구함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 5. 日本의 6大企業集團의 現況<sup>27)</sup>

6大企業集團은 여러 업종에 속하는 각 會員社가 獨立性을 가지면서 社長會를 통하여 연한 結合關係를 형성하고 있다(表 14). 結合의 요소에는 株式所有에 의한 資本的 關係, 任員의 兼任·派遣에 의한 人的 關係와 계속적인 去來·融資·技術提携 등에 의한 契約的 關係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제관계를 1987년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 가. 資本 및 人的 關係

먼저 資本的 關係에 있어서 會員社間의 株

27) 이하의 통계자료는 日本公正取引委員會(1989)에서 발췌한 것이다.

株式所有를 통한 結合度를 나타내는 平均持株率의 6大企業集團平均은 점감하여 1987년에 1.52%에 불과하다<sup>28)</sup>. 會員社間의 株式所有關係의 넓이를 나타내는 株式所有關係頻度は 舊財閥系集團의 平均이 73.45%로 銀行系集團의 平均 34.16% 보다 높다<sup>29)</sup>. 6大企業集團의 平均은 1981년의 50.6%에서 53.81%로 상승하였다. 會員社와 企業集團과의 結合의 정도를 나타내는 株式相互保有率은 1987년에 舊財閥系集團平均이 28.93%로서 銀行系集團平均 16.36%보다 상당히 높아 株式所有關係頻度에서와 같이 舊財閥系集團의 結合이 강하다<sup>30)</sup>. 6大企業集團의 株式相互保有率은 최근 저하경향을 보여 1987년에는 22.65%로 되었다.

平均持株率이나 株式相互保有率의 저하는

28) 平均持株率 = (會員各社의 同一企業集團에 의한 持株率의 合計/同一企業集團내에 실제로 성립되어 있는 株式所有關係의 數) × 100.  
企業集團平均 = 各企業集團의 平均持株率의 合計/企業集團數.

29) 株式所有關係頻度 = (同一企業集團內에 실제로 성립되어 있는 株式所有關係의 數/同一企業集團內에 성립가능한 株式所有關係의 數) × 100.  
企業集團平均 = 各企業集團의 株式所有關係頻度の 合計.

30) 株式相互保有率 = (各企業集團의 社長會會員各社의 發行株式總數中 他會員社 所有株式數의 占有率의 合計/各企業集團의 社長會會員社數) × 100.  
企業集團平均 = 各企業集團內 株式相互保有率의 合計/企業集團의 數.

31) 派遣會社比率 = (同一企業集團의 會員社인 銀行·商社로부터 任員을 派遣받고 있는 企業의 數/企業集團會員社의 數) × 100.  
企業集團平均 = 各企業集團의 派遣會社比率의 合計/企業集團의 數.

32) 派遣任員比率 = (同一企業集團의 會員社인 銀行·商社로부터 派遣되어 있는 任員數/企業集團會員社의 任員總數) × 100.  
企業集團平均 = 各企業集團의 派遣任員比率의 合計/企業集團의 數.

1977년의 獨占禁止法改正으로 保險會社를 제외한 金融機關의 株式所有上限이 10%에서 5%로 인하됨에 따른 金融機關所有株式의 처분과 株式所有總額制限의 도입, 企業集團과의 結合이 약한 회사의 社長會 가입과 企業集團이 出資設立한 회사의 탈퇴, 轉換社債의 발행에 의한 활발한 增資에 대응하지 못한 企業集團會員社에 의한 株式取得의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企業集團의 結合은 약간 약화되었다고 보이나 株式所有關係頻도가 상승한 것에 비추어 보면 企業集團內에서의 株式所有를 통한 관계는 다소 넓어지는 경향에 있다고 생각된다.

企業集團의 人的 結合關係를 보면 派遣會社比率은 1987년에 67.69%인데 總合商社로부터의 派遣會社比率은 9.99%로 銀行의 57.79%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그나마 계속하여 저하하는 경향에 있다<sup>31)</sup>. 派遣任員比率도 저추세에 있어 1987년에는 平均 7.13%(2.0인)로 되었다<sup>32)</sup>. 그러나 銀行으로부터의 派遣任員比率은 1987년에 3.92%로 대체로 거의 일정한 比率을 유지하면서 다소 증가한 반면 總合商社로부터의 派遣任員比率은 銀行보다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계속 저하하여 1987년에는 0.44%로 되었다.

#### 나. 契約的 關係

企業集團의 契約的 結合要素로서 會員社間과의 金融去來狀況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企業의 資金調達方法으로서 借入金 이외에도 社債 및 株式發行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直接金融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借入金依存率은 1981년의 17.52%에서 1987년에 17.32%로 저하하였

고 내용면에서도 長期・短期借入金 모두 저하 경향을 보이고 있어 借入金の 면에서의 企業集團의 結合은 약화되었다<sup>33)</sup>. 그리고 金融機關에 대한 借入金依存率은 대체로 銀行系企業集團보다 舊財閥系企業集團이 높아 1987년의 平均이 각각 21.84%와 14.88%로 되었다. 그리고 貸出金依存率을 보면 6大企業集團의 平均이 1981년의 7.26%로부터 1987년의 3.52%로 현저하게 저하하였다<sup>34)</sup>. 이것은 産業構造의 전환에 따라 資金需要가 非製造業分野 내지 中小企業分野로 이행하고 있어 金融機關의 貸出先으로서 企業集團會員社 이외의 會社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銀行에 의한 企業集團의 結合度는 平均持株率・借入金依存度・貸出金依存度の 관점에서는 약화되었으나 派遣任員比率은 오히려 상승하였다. 또한 銀行은 社債의 수탁이나 外債의 발행, 각종의 情報提供이나 相談業務를 하고 있어 계속하여 會員企業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많은 企業集團에 있어서 銀行이 事務局으로 되어 企業集團의 각종 회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銀行이 企業集團 속에서 발휘하고 있는 기능은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企業集團의 中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總合商社의 경우는 企業集團會員企業에 대한 株式所有나 任員派遣의 比率이 銀行보다 상당히 작고 그것도 약간 저하하는 경향에 있다. 이는 總合商社의 金融機能 저하, 原燃料 등의 賣出額 감소, 製

品輸入의 증대 등에 의해 내외의 去來에서 차지하는 總合商社의 비중이 저하한 것에 기인한다.

#### 다. 6大企業集團의 經濟的 比重

1987년에 6大企業集團의 社長會會員社數는 銀行・保險會社 등 金融業部門의 企業을 제하면 163사로서 金融業을 제한 全法人企業(1,929,754사)에서 점하는 比率은 0.00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163사가 金融業을 제한 全法人企業에 있어서 總資産의 13.28%, 賣出額의 14.68, 資本金의 15.19%를 점유하고 있는데 1981년에 비해 企業集團會員社의 總資産과 賣出額의 占有率은 약간 저하하였다(表 15). 이것은 주로 企業集團會員社에 소위 重厚長大型 産業을 위시하여 製造業을 영위하는 것이 많고 日本經濟의 産業構造의 전환에 따라 成長率이 높은 非製造業部門의 企業이 적은 것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賣出額에서 6大企業集團이 차지하는 比率이 저하한 것은 6大企業集團 중에 비중이 높은 總合商社의 賣出額이 円高・低油價 등에 의해 그다지 신장하지 않았던 것이 큰 요인으로 되어 있다.

6大企業集團의 金融業을 제한 163사에 이들 企業이 出資하고 있는 子會社(50%를 초과하여 出資하고 있는 會社) 및 關係會社(10%이상 50%이하를 出資하고 있는 會社)를 더하면 合計는 11,998사로 金融業을 제한 全法人企業數의 0.622%이다. 그러나 이들 企業이 갖는 占有率은 總資産의 26.95%, 資本金의 32.3%, 賣出額의 25.20%로서 1981년에 비하여 總資産과 資本金의 占有率은 증가하고 賣出額의 占有率은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6大企

33) 借入金依存率=(同一企業集團內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企業集團會員社의 借入金의 合計) × 100.

34) 貸出金依存率=(企業集團內 金融機關의 同一企業集團會員社에의 貸出金/企業集團內 金融機關의 貸出金 總額) × 100.

〈表 15〉 6 大企業集團이 日本經濟에서 점하는 地位  
(社長會會員社中 非金融業企業의 경우)

(단위 : %)

		資本金	總資產	賣出額
6大企業集團 合計	1981	14.57	15.10	15.78
	1987	15.19	13.28	14.68
舊財閥系 企業集團 小計	1981	6.37	6.67	7.38
	1987	6.68	5.63	6.46
銀行系 企業集團 小計	1981	8.20	8.43	8.40
	1987	8.51	7.65	8.22
非金融法人企業		100.0	100.0	100.0

註 : 複數의 企業集團에 속한 企業에 대하여는 小計欄에서 調整했음.

〈表 16〉 6 大企業集團이 日本經濟에서 점하는 地位  
(子會社・關係會社를 포함한 경우)

	企業數(개, %)	資本金(%)	總資產(%)	賣出額(%)
6 大企業集團 社長會會員社	163(0.006) (157(0.009))	15.19 (14.57)	13.28 (15.10)	14.68 (15.78)
子會社	4,960(0.257) (4,271(0.249))	3.86 (3.48)	4.21 (2.05)	3.82 (3.55)
關係會社	6,875(0.356) (7,529(0.439))	12.98 (12.70)	9.46 (6.01)	6.70 (8.30)
計	11,998(0.622) (11,957(0.697))	32.03 (30.75)	26.95 (23.16)	25.20 (27.63)

註 : 1) 金融業을 포함하는 會社를 제외하였고 占有率의 算定對象은 非金融 全法人企業으로 하였음.

2) ( ) 안은 1981년의 數值.

3) 子會社・關係會社는 外國會社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또한 重複調整을 하지 않았음.

業集團은 企業集團會員企業으로 보면 약간 지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子會社 및 關係會社를 더하여 본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表 16).

6大企業集團의 각각의 會員社가 個別商品市場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生産集中

度調査의 對象品目 450개 중 34.2%에 해당하는 154개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1~3위를 차지하는 品目數는 연 456개에 달한다. 제1위를 점하는 品目數의 業種別 分布狀況을 보면 非鐵金屬이 80%로 가장 높고 펄프·紙·紙加工品이 53.3%, 化學工業이 49.4%, 電氣機械

器具 및 輸送用 機械器具가 각각 45%, 窯業·土石製品이 36.8%, 一般機械器具가 34.9%의 순서이다.

여하간 6大企業集團이 日本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며 각각의 업종에 있어서 모두 유력한 企業이 企業集團會員社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그 영향력은 계속하여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金融業을 제한 總資産上位 100社 중 6大企業集團의 會員社는 54社(舊財閥系 23社, 銀行系 31社)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資本金上位 100社(上場法人에 국한) 중에서 6大企業集團의 會員社數는 舊財閥系 27社, 銀行系 33社로 計 60社에 달한다.

## 6. 企業集團의 變貌

이상과 같이 企業集團의 結合關係·株式相互保有關係·融資關係와 관련시켜보면 各企業集團의 株式相互保有比率는 대체로 1981년 이후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融資比率도 各集團 모두 현저하게 저하하여 최근의 金融事情 및 企業의 自己金融型으로의 이행을 반영하고 있다. 이미 都市銀行의 融資를 통한 系列化는 企業에 있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株式·融資를 통한 結合關係의 이완이 금후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企業集團 특히 都市銀行과 總合商社를 중심으로 한 金融系企業集團에 있어서 產業構造의 변화와 金融市場의 構造變化의 과정에서 적어도 系列融資·株式相互保有比率 등의 結合關係는 별로 진척되지 않고 社長會의 기능도 강화된 징후는 볼 수 없다. 오히려 獨立系 企業集團 중 產業構造의 知識集約化·

ME革命이라는 自動化的 進進, 新素材의 出現, 生命工學의 발전 등의 產業構造와 技術變革의 과정에서 日本電氣·富士通·소니 등을 중심으로 하는 新興企業集團이나 서비스産業化라는 과정중에서의 私鐵그룹·流通그룹의 발전이 괄목하게 되었다. 금후 상당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金融系企業集團의 이완과 獨立系企業集團의 신장이라는 경향이 변화하리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獨立系로 불리는 특정한 巨大企業을 중심으로 하는 系列子會社·關係會社群에 의한 企業集團에 있어서도 日立·新日鐵·토요타·日産 등 巨大産業資本이 조직하는 企業集團과 流通·서비스系에 속하는 西武·東急·다이에 등의 企業集團에서는 그 構成會員企業의 業態, 中心企業과의 業務上·技術上 關係 등이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產業構造의 변화 특히 知識集約化라는 產業技術의 혁신과정에서 新技術에 대응하기 위한 2次製品과 관련분야의 企業組織 및 流通·서비스關聯企業의 組織化를 통하여 獨자의 企業集團을 만들었다는 점과 특정한 巨大企業을 중심으로 한 金字塔型 또는 圓環型的 企業集團이라는 성격과 형태는 獨立系企業集團에 공통되는 특색이다. 이들이 新技術·新分野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重化學工業化에 대응한 重厚長大型인 金融系企業集團에 비해 좀더 현대적이고 기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產業構造의 知識集約化·ME革命이라는 產業構造의 변화를 고려하면 金融系企業集團 특히 舊財閥系의 경우와 같이 系列企業을 한정된 閉鎖型的 企業集團을 유지하는 것은 점차로 곤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현재 新技術의 개발이나 企業化에 관하여 同系企業集團

이외의 企業과 系列을 넘은 提携關係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企業集團은 앞으로 集團의 중추인 銀行·信託銀行·生命保險會社·損害保險會社는 남으면서 系列企業의 외곽에 있어서의 출입이 어느 정도 자유롭고 연한 開放型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日本의 企業集團은 그 始源의 生成過程에 따라 舊財閥系이건 銀行系이건 또는 최근의 獨立系이건간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모두 産業構造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리면서 기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즉 日本의 企業集團은 경쟁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內部構成과 外延戰略을 변화시키고 中小企業과의 관계를 신축적으로 적절히 조정하면서 日本經濟에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日本의 財閥解體는 競爭促進을 통하여 日本經濟의 飛躍의 成長을 가능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産業組織政策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財閥解體로 생성된 企業集團이 經濟成長過程에서 기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企業集團은 持株會社設立을 금지하고 企業結合을 규제하는 「獨占禁止法」의 범주 안에서 戰前 財閥系企業간의 「仲間」意識에 따라 集團의 내부에서는 협조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集團으로서 경쟁한다는 「內」와「外」를 구별하는 日本의 社會組織 傳統이 적응한 측면도 있지만 좀더 중요한 經濟的 動機로서는 利潤極大型 互惠去來·販路確保·價格安定·外部效果의 內部化·去來費用 및 情報費用의 절감·不確實性的의 저하·資金利用費用의 감소·雇傭安定 등 機能的 集團의 성격이 지적되고 있다<sup>35)</sup>.

日本의 企業集團은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共同效果를 누리면서 集團相互間에 치열히 競爭함으로써 動態的인 效率性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結果를 가능하게 하였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獨占禁止法에 의해 戰前의 財閥에서와 같은 所有集中 및 이에 수반되는 經濟의 共同獨占化와 退嬰的 經營體制의 제거이다. 企業集團間的 競爭은 각 企業의 競爭力을 높여 國際市場에서의 위치를 견고히 하면서 동시에 多數의 革新的 獨立企業의 출현도 초래하였다. 企業集團은 競爭力提高를 위하여 下請企業을 포함한 다수의 關聯會社와의 協力關係를 발전시켜 최근에는 이것이 情報連結組織型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결국 일본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財閥과 企業集團의 근본적인 차이는 所有의 個人集中 여부로 귀착되는 것이다.

## V. 結言：經濟力集中對策의 基調

### 1. 종래의 經濟力集中 抑制對策

우리나라에서 經濟力集中緩和의 효과를 기대한 대책은 獨占規制法의 시행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강구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1974년의 5·29措置로서 적극적인 企業公開와 企業財務構造改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이 종료되었다. 다음으로 1980년의 9·27措置에서는 企業體質을 강화하려는 목적하에 會社整理制度의 악용방지, 企業의 不動產所有의 제한,

35) 青木 외(1986).

救濟金融의 최대한 억제, 與信管理機能의 강화등을 기하려 하였으나 역시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중단되었다. 그 밖에 大企業與信管理制度, 企業集團에 의한 金融産業支配의 규제, 企業公開의 촉진, 徵稅行政의 효율화, 中小企業의 보호·육성, 국내외로부터의 競爭의 도입 등 諸般施策이 각각 강도와 시점을 달리 하여 시행되어 왔지만 각각의 성과가 다르며 더욱이 종합적 시각에서 각종 정책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産業合理化措置를 통하여는 일부 企業集團이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財閥問題를 법적 장치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시도는 獨占規制法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 法律이 1980년에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第1條에 이 法律의 한가지 목적으로서 經濟力集中의 방지를 제시하였을 뿐 실제 규정에서는 競爭制限의 企業結合의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獨占禁止手段만을 규정한 것에 그쳤으므로 複合結合을 핵으로 하는 企業集團의 규제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獨占規制法하에서의 企業集團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규제는 1986년의 1차개정과 이를 강화한 1989년의 2차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동법의 第8條에서는 持株會社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第9條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企業

集團의 系列會社間 相互出資를 금지하고 있다<sup>36)</sup>.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두가지 형태는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좀더 중요한 것은 間接相互出資를 통한 企業結合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第10조에서는 企業集團의 系列會社의 他會社出資總額을 會社純資産額의 40% 이내로 제한하였다<sup>37)</sup>. 또한 第7條의5에서는 企業集團의 系列會社인 金融·保險會社에 대하여 취득·소유하고 있는 國內系列會社株式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87년 이래 이상과 같은 企業集團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면서 실제로 企業集團에 대한 出資制限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려면 우선 猶豫期間이 경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經濟力集中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려면 租稅·金融을 포함한, 다른 政策과 制度도 동시에 동원되어야 한다. 특히 出資總額은 絕對額으로 규제되지 않고 出資率로 규제되므로 企業集團의 絕對的規模와 系列企業數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규정은 企業集團에 속한 系列會社의 財務構造를 개선하고 株式分散을 다소 촉진하는 효과는 갖지만 企業間資本關係 등을 통한 所有集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 2. 經濟力集中을 보는 視角

우리나라에서 經濟力集中이 갖는 構造的 特徵을 獨·寡占의인 大規模 系列企業으로 구성되는 企業集團이라는 조직과 그것의 多部門活動 및 所有集中이라고 하면 그 對策도 자연히

36) 실제로 民間所有의 純粹持株會社는 없으며 非金融會社間의 直接相互出資도 1984년의 商法改正으로 최초로 금지되기 전에도 그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 獨占規制法의 1차개정시에는 이 규정에서 金融業 및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제외하였으나 2차개정시에 이를 삭제하였다.

37) 본조항의 대상도 獨占規制法의 2차개정시에 상기한 7조 3의 대상과 같도록 되었다.



이 세가지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經濟力集中對策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經濟力集中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經濟力集中의 過程, 經濟力이 실제로 행사되는 樣態와 程度, 전반적인 國家社會의 構造와 社會通念의인 價値觀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資本主義體制의 붕괴를 주장하는 社會主義나 자유방임적인 自然組織論과 같은 극단적인 路線과 달리 資本主義의 본질을 살리면서 폐해를 제거하려는 改良主義의 시각에서는 經濟力集中을 체제문제로서 인식하되 그 構造의 原因을 분해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체제를 일층 견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는다. 이것의 기본적 명제는 資本集中의 求心力과 所有分散의 遠心力을 적합하게 결합함으로써 資本主義의 自己淨化機能과 生動力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經濟力集中對策의 基調는 效率性和 衡平性이 相乘作用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企業集團이 부분적으로는 市場與件에 最適反應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競爭의 동기와 이에 따른 效率의 成果는 인정하면서 集中化에 수반되는 否定的 效果만을 제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衡平의 문제는 우선 균등한 經濟的 機會와 經濟行動의 公正性을 확보하여 접근하되 이것으로써 불충분한 측면을 다른 政策手段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衡平性을 높이면 각 經濟主體에 대한 動機賦與・經濟主體間의 대등하고 협조적인 관계의 함양 등을 통하여 다시 經濟全般에 걸친 效率性을 증진시킨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衡平性은 단순한 物量的 再分配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政府를 포함한 모든 주체가 최소한의 經濟的 倫理性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企業集團의 系列企業間에 個人大株主나 企業出資를 통한 資本的 連結이 소멸되고 각 기업의 株式이 大衆分散된다면 企業集團은 해체된다. 市場이 완전할수록 그리고 稅法이나 獨占規制法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수록 기업간의 連結關係를 통한 共同效果는 줄어들 것이다. 여하간 특정한 경제활동을 市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組織內部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독립한 기업들간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連結關係를 맺을 것인지는 經濟與件에 대한 企業의 合理的 選擇 또는 所有者들의 個人的 選擇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企業集團의 所有者들이 世代交替될 때 相續者들간에 系列企業을 각각 전담할 수 있도록 所有權을 교환할 수도 있고 종래의 結合形態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企業集團은 항구적 조직은 아니다. 반면 經濟與件의 변화에 대응하여 範圍와 強度는 다르지만 어떤 형태이든 企業集團은 항상 형성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經濟的 合理性을 추구함에 따른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企業集團은 그 규모와 능력으로 보아 앞으로 상당기간 自生的 成長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企業集團의 폐해는 市場機構內에서 충분히 제거될 수 없으며 아울러 經濟力集中에는 市場外的 要因도 많으므로 政府介入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政府介入은 자칫 政策의 방향이나 수단의 不合理性으로 政府失敗를 유발하여 오히려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經濟秩序政策 내지 產業組織政策은 이에 반대하는 확연한 利益集團이 있

는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궁극적인 이득은 보편적인 성격의 것이므로 강력한 支持集團이 쉽게 형성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러한 政策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다른 관련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3. 經濟力集中對策의 基本方向

#### 가. 所有集中의 緩和

企業集團의 所有集中이 완화되지 않는 한 經濟力集中問題의 核은 제거되지 않는다. 富의 分散을 위하여 企業集團 및 그 大株主들의 保有·相續財產 특히 不動産에 대한 효과적인 徵稅行政이 중요하지만 所有集中의 緩和는 企業所有의 직접적인 分散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국민의 資本參與를 통한 企業公開의 실질적 확산으로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國民所得水準의 향상과 所得分配의 개선, 企業體質의 강화, 專門經營人의 責任意識 高揚, 投機性投資機會의 축소, 株式市場興件의 개선 등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일회성의 株式所有分散은 종전 직후 日本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株式所有의 混亂을 초래하며 企業集團의 大株主를 포함한 있는 자들간의 再分配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주식의 大衆分散을 위한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의 株式公開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政府로서도 관련법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政府는 현실적

범위 내에서 企業公開施策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企業公開興件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는 企業에 대하여는 與信規制·會社債發行制限 및 기타의 制裁手段을 도입·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集團의 金融産業支配를 방지·배제하기 위하여는 우선 所有構造面에서 銀行法上 同一人の 범위를 축소하고 同一人の 市中銀行株式 所有上限을 인하하며 현재는 제한이 없는 地方銀行의 소유에 대하여도 일정한 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所有分散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銀行負債를 直接金融을 통하여 상환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企業集團에 대한 현행 與信規制를 第2金融圈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企業集團系列企業간의 相互支給保證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集團에서 기대될 수 있는 共同效果는 반드시 資本的 結合을 통한 기업간의 강한 결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면 企業間 株式相互保有는 여러가지 폐해를 수반하므로 현재의 相互出資額과 出資總額 限度超過額의 처분을 촉진함과 아울러 出資總額에 대한 上限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다만 日本의 경험과 같이 資本自由化에 대비하여 國內資本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相互出資를 활용하려면 적정한 許容上限을 신중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나. 競爭促進政策의 強化

企業人能力的 차이가 존재하는 한 經濟力集中은 항상 발생할 것이며 企業集團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多邊化(소위 문어발式 經營)는 危險分散과 利潤追求라는 私企業 본래

의 동기에 입각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人能力的 발현은 존중하되 企業集團의 規模非效率性和 非能率的이며 競爭制限의인 多邊化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競爭의 압력을 부과시키는 것이다. 競爭에 직면한 企業은 技術·經營·組織·動機面的 非效率性を 제거할 수밖에 없으며 既存市場에서의 競爭은 企業의 剩餘能力을 소진시키므로 무리한 多邊化를 시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國內企業의 競爭의 進入에 대한 制度的 障壁과 海外競爭에 대한 輸入障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企業集團의 非效率의 多邊化를 억제하기 위하여 企業集團別로 重點業種의 專門化를 유도하려는 것은 企業에게 업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企業과 市場의 생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여건하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동일업종의 고수가 아니라 活動領域의 부단한 流動化로서 이것은 여러 업종에 걸친 多邊化뿐만 아니라 동일업종 내에서의 適所(niche)의 焦點化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企業의 특성은 製品的의 市場性格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企業의 經營資源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經營資源의 特殊性의 정도에 따라 같은 업종의 企業들이 같은 여건변화에 적응하는 양태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企業集團의 內部構成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企業의 業種·製品·業態는 市場環境에 대한 企業의 最適反應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政府로서는 이를 위한 與件造成과 誘引提供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최근 情報化에 따라 產業間 境界가 점차 소멸되고 融業化(fusion)가 진전되므로 專門化의 의미도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38)</sup>.

企業集團의 經濟力에 대한 부분적인 拮抗力(countervailing power)은 여타의 單獨企業 특히 中小企業과 消費者 및 勞動者들에서 찾을 수 있다. 消費者와 勞動者의 권익보호를 차치할 때 종래의 中小企業施策은 주로 社會政策 내지 產業構造政策의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大企業과 中小企業間的 垂直的 協力關係보다는 水平的 競爭關係에서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sup>39)</sup>. 獨占規制法은 企業結合을 통한 獨占化와 大企業의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을 방지하고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제하는 등 競爭을 촉진함으로써 반사적으로 中小企業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 데 그치고 직접적인 보호·지원은 다른 中小企業關聯法制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經濟力集中對策의 하나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中小企業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법제가 갖는 목적하에서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獨占規制法の 시행을 위한 政府의 內部指針인 현행의 企業結合審査要領에는 混合結合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나 經濟力集中對策으로서만 소위 中小企業部門에 대한 大企業의 진출을 규제하는 것은 이 法律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企業集團 특유의 不公正去來 및 競爭制限行爲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

38) 情報化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拙稿(1989) 참조.

39) 拙稿(1986)는 大企業과 中小企業間的 產業組織的 關係를 다루고 있다.

企業集團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複合結合의 형태를 갖는데 水平結合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垂直結合과 달리 複合結合이 갖는 競爭制限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곤란하다.

#### 다. 尖端技術과 經濟力集中

經濟力集中抑制를 논의할 때 흔히 제기되는 반론으로서 尖端技術의 발전을 위하여는 企業集團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論旨는 尖端技術 내지 尖端産業이 대규모의 投資를 소요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資本市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면 소모자본은 企業集團외에서 조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논리는 充分條件은 되겠지만 必要條件은 되지 못한다. 더욱이 기술 자체의 면에서는 항상 여러 기업간의 共同開發의 대안이 있으며 企業集團만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尖端技術의 관점에서 企業集團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企業集團의 경제적 유리성은 優越的 地位의 濫用 등의 不正去來行爲에 기인하는 경우를 별도로 한다면 獨占化가 아니라 規模의 經濟性 내지 複合的 企業力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獨占規制法의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企業集團의 系列企業들이 공동으로 技術開發을 할 수 있는 유리성은 부정할 수 없는데 總合的 技術開發力 자체를 위법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좀더 중요한 문제는 근년 가속되고 있는 尖端産業技術의 혁신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이를 商品化하여 該當市場에서 獨占的 位置를 갖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장기간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鐵鋼·非鐵金屬·化學藥品 등의 素材型製品市場에 있어서는 集中度가 높을수록 市場支配力은 그만큼 크게 된다고 할 수 있지만 尖端産業技術製品의 市場에 있어서는 한 企業의 占有率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혁신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新技術이 즉시 陳腐化하는 高度産業技術의 競爭市場에 있어서는 Schumpeter가 말하는 創造的 破壞(creative destruction)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企業의 생존을 위한 최대의 競爭手段이다.

이와 같이 격심한 技術開發競爭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단순한 企業의 巨大性은 점차 의미를 잃고 있다. 企業集團이 금후 尖端技術産業을 중축으로 하는 經濟에 있어서 集團으로서의 共同效果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企業集團의 재편성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尖端技術開發을 위하여는 企業規模가 커야 하므로 企業集團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企業規模가 커야 한다는 것을 要素市場의 不完全性에 비추어 인정하더라도 生産規模의 大型化와 所有集中을 통한 企業集團의 형성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 라. 餘他政策의 同時的 推進

經濟力集中은 본래 다면적인 문제이므로 그 대책도 협의의 公正去來政策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원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經濟力集中은 與信管理·進入制限·産業支援·輸入制限 등 여러가지 政策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 經濟力集中對策은 각종의 部分的 政策手段을 일관성있게 동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종래에도 經濟力集中을 완화하

러는 단편적인 정책이 취해져 왔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거나 종합적으로 조정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短期經濟政策의 시급성을 이유로 정책이 변질된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1986년의 獨占規制法 1차개정 이래 企業集團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면서 시행되고 있으며 더욱이 經濟秩序確立의 긴요성이 國民的 合意를 얻고 있다. 작금의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資本主義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고 이에 입각하여 效率과 衡平을 조화하는 經濟體制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政府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公正去來政策은 그 핵심적인 기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經濟力集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一般的인富의 不均等分配와 이에 병행하는 富의 非生產的·投機的 利用 및 富의 蓄積過程上的 不公平性和 不公正性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企業集團의 大株主에 의한 所有集中을 초월하는 문제로서 전반적인 經濟倫理 및 經濟秩序의 정립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우선 각종의 準租稅를 없애는 대신 租稅行政을 엄정히 해야 하며 認許可制度·產業政策·金融慣行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政府와 大企業間의 유착관계를 단절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經濟全般의 清廉性和 透明성을 높이기 위하여 金融實名制와 土地公概念制度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마. 經濟倫理의 確立

이제까지는 주로 對策設定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을 논의하였지만 그 대상이 되는 企業集團이 經濟的 倫理를 추구하지 않는 한 對策의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근본적으로 私的 經濟主體의 利己的 動機를 인정하는 資本主義體制에서 企業의 利潤追求는 당연한 것이며 그로 인한 成果는 결국 企業의 營利行爲에 대한 法的·社會的 制約條件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상으로는 企業에 대하여 倫理性을 요구하기보다는 制約條件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기업이 이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난제인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어느 정도의 愛他心에 입각한 商業的 道德心(commercial morality)이 의미를 갖게 되며 특히 經濟力集中에 있어서는 그 生成過程과 潛在力에 비추어 이것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商業的 道德心이 없다면 市場機構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도 한계가 있듯이 企業集團의 社會的 責任感이 결여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항상 政策을 無力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經濟倫理는 市場機能이 불완전할수록 그리고 市場力의 分布가 불균등할수록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sup>40)</sup>. 經濟力集中이 문제시되는 큰 원인이 分配·衡平·共同體意識 등 단순한 效率性 이외의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는 한 企業集團은 일반 經濟主體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經濟倫理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40) 이 문제에 관한 제학설의 개관은 拙稿(1988) 참조.

▷ 参 考 文 献 ◁

- 李奎億,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産業組織的 關係」, 『韓國開發研究』, 1986년 가을호.
- \_\_\_\_\_, 「市場機構의 論理와 倫理」, 『韓國開發研究』, 1988년 가을호.
- \_\_\_\_\_, 「情報化와 産業組織」, 『韓國開發研究』, 1989년 가을호.
- \_\_\_\_\_. 尹暢皓, 『産業組織論』, 全訂版, 法文社, 1988.
- \_\_\_\_\_. 李成舜,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院, 1985.
- \_\_\_\_\_. 李在亨・金周勳, 『市場과 市場構造』, 韓國開發研究院, 1984.
- 御園生 等, 『日本の獨占禁止政策と産業組織』, 河出書房新社, 東京, 1989.
- 奥村 宏, 『新・日本の六大企業集團』, ダイアモンド社, 東京, 1983.
- 日本公正取引委員會, 『獨占禁止政策30年史』, 1977.
- \_\_\_\_\_, 「企業集團の實態について」, 1989.
- 青木昌彦・小池和男・中谷巖, 『日本企業の經濟學』, ちいびーえす・ブリタニカ, 東京, 1986.
- Galbraith, J. K., *The Anatomy of Power*, Hamish Hamilton, London, 1984.
- Jones, K., *Law and Economy: The Legal Regulation of Corporate Capital*, Academic Press, New York, 1982.
- Leff, N. A., "Industrial Organiz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the Developing Country: The Economic Group,"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uly 1978.
- Leibenstein, H.,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8.
- Merhav, M., *Technological Dependence, Monopoly and Growth*, Pergamon, London, 1969.
- Russell, B., *Power*, Penguin, New York, 1938.